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3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4
-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5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6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7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국세청) 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국세청) 9
-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0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11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13

02 교육·보육·가족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여성가족부) 16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다음 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1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3 국방·병무

- 「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25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26
-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28
- 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29
-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 30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31
- 사회복지위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병무청) 32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33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34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병무청) 35
- 사회복지위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36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급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응자지원 (방위사업청) 37
-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방위사업청·조달청) 38
-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39
-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 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40

04 행정·안전·질서

-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여성가족부) 17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19
-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48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
-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50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51
-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52
-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53
- 불법체류 외국인 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54
-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법무부) 55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법무부)	56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57
•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58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59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	60
•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61
•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행정안전부)	62
•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63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조례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64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6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66
•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67
•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68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6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70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71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72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7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7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75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76
• 초고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77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78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경찰청)	79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80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81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82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83
• 유선 결합상품 월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8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5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숙박 가능 (여성가족부)	87
•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88
•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문화재청)	89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문화재청)	90
• 공·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91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문화재청)	92
• 전통재료의 체계적 공급·관리 시행 (문화재청)	93

06 농림·수산·식품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101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02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03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105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06
• 농어촌민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07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08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109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0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111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2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113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4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115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116
•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시행 (해양수산부)	117
•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118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119
•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120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121
-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22
-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123
-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24
-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125
-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126
-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127

07 환경·기상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132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133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134
-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 135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환경부) 136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 137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 138
- 더 안전한 수도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139
-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140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141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142
-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환경부) 143
- 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144
-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기상청) 145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기상청) 146
- 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기상청) 147
- 내가 필요한 지진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 148
- 상세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149
-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기상박물관 개관』 (기상청) 150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154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5
-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156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7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58
-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9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60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61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162
-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163
-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164
-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6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166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167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168
-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169

09 보건·복지·고용

-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74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17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176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177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178
-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179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18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181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 '16.9.29.) (고용노동부) 182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 18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84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 185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86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87
- 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88

10 국토·교통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190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가등기 도입 (국토교통부) 191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3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4
-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5
-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49
-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50
-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153

법무부

- 주택임대차 목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51
-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52
-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53
- 불법체류 외국인인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54
-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55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56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57
-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58

국방부

- 「군소음보상법」 시행 25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6
-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28

행정안전부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59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60
-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61
-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62
-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63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64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01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102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103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105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106
- 농어촌민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107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108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109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110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111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112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113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114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자 인정 154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155
-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156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157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158
-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159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160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161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162
-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163
-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164
-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165

보건복지부

-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74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17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176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177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78
-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17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132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133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34
•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135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136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37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138
• 더 안전한 수도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139
•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140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141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142
•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143

고용노동부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18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81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 '16.9.29.)	182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18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184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185

여성가족부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16
•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17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18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19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6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66
•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속박 가능	87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190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191

해양수산부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115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116
•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117
•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118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119
•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120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121
•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122
•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123
•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124
•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125
•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126
•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127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166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167

국가보훈처

•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29
•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186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187
- 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188

국세청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6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7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9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0

조달청

-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67
-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68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6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70

병무청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31
- 사회복지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32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33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34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35
- 사회복지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36

방위사업청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 37
-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38
-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39
-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 조정 규정 삭제 40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71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72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7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7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75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76
-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77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78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79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80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88
•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89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90
• 공·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91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92
•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93

특허청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168
------------------------	-----

기상청

• 예·특보 체계 개편	144
•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145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146
• 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147
• 내가 필요한 지진정보만 알려드립니다	148
• 상세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149
•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기상박물관 개관』	150

공정거래위원회

•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169
------------------------------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11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13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81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82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83

방송통신위원회

•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84
----------------------------	----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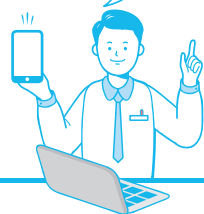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3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4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국세청) 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국세청) 9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34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병무청) 35
-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방위사업청·조달청) 38
-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48
- 불법체류 외국인 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54
-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58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6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70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경찰청) 79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83
-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84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110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4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119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133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환경부) 136
- 상세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149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7
-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16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176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177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신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180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84
- 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88

<http://whatsnew.moef.go.kr>

여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8월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1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13
-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52
-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법무부) 55
-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61
-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67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101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02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03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105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06
-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07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08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109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111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2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113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115
-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118
-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120
-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125
-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126
-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127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154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60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61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162
-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163
-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16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166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86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190

9월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0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여성가족부)	16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다음 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18
•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29
•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	30
•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53
•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행정안전부)	62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65
•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68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80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116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121
•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123
•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24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87

10월

•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5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33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법무부)	56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	60
•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	135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	137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	138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141
•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 「기상박물관 개관」 (기상청)	150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5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58
•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59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178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	18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1월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11
•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여성가족부)	17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19
• 「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25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59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71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72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7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7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75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81
•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숙박 가능 (여성가족부)	87
•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문화재청)	89
•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139
•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140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기상청)	146
• 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기상청)	147

12월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
•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50
• 주택임대차 목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51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57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76
• 초고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77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78
•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22
• 내가 필요한 지진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	148
•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168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181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가등기 도입 (국토교통부)	191

기 타 : 2020년 상반기 시행 또는 2020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날짜 미정)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6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7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26
•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28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31
• 사회복지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병무청)	32
• 사회복지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36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식 유희시설 용자지원 (방위사업청)	37
•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39
•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 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40
•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63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64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66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82
•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88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문화재청)	90
•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91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문화재청)	92
•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문화재청)	93
•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해양수산부)	117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132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134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142
•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환경부)	143
• 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144
•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기상청)	145
•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156
•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65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167
• 눈, 홍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74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175
•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179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16.9.29.) (고용노동부)	182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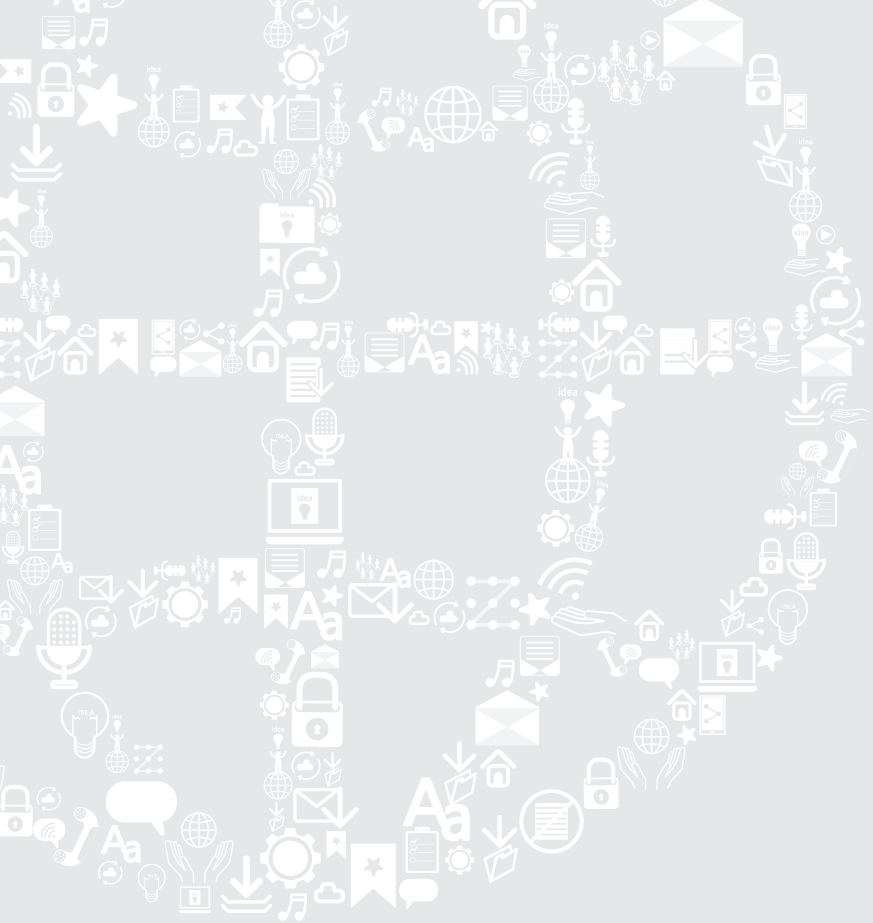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국방·병무
- 04 행정·안전·질서
- 05 문화·체육·관광
- 06 농림·수산·식품
- 07 환경·기상
-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9 보건·복지·고용
- 10 국토·교통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http://whatsnew.moef.go.kr

1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6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20.3.23.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 과세유형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2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Before

보이스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



After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전자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6)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266조) 및 관세법시행령(264조의2)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
- **주요내용** 관세청장·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 실시
 - 조사 주기 : 매년 1회
 - 조사 대상 :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다음사항을 공표
 -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044-215-5175)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합니다.

-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잠정)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 **추진배경**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뒷받침
- **주요내용**
 - 신청요건
 - 법인: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신청인: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제도내용
 - 경쟁입찰 보류(최대 5년) 및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 **시행일** 2020년 10월(잠정)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기재위의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년 한시적으로 적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기재위의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 ②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7

-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기한을 2일(기존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11. 개정)
 - * 다만,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부가령§11⑤),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부가령§11②)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044-204-3412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추진배경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속 발급
- 주요내용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였으나,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20.2.11. 개정)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추진배경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57)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서식 등을 신설하여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및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 제출 없이 특송업체 배송정보를 통한 적재이행 신고방법 도입으로 이행간소화·물류비용 절감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 수출고시 개정내용은 '20년 9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의 정식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고시개정

- **추진배경** 해외 배송정보가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 규정
- **주요내용**
 -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한다.
- **시행일** 2020년 9월 예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대포 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020년 8월 20일 시행).
 - *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이하 → 5년이하' 로 상향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 ②범죄수의 환수 가능
-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4.29일 배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추진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2020년 8월 20일 시행),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획득시 본인확인 법적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일정금액 이하는 채권소멸절차 미개시(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과태료 5천),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천) 의무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
-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 2019년 6월 출범
-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거래소'가 2020년 5월 11일부터 개설되었습니다.
- 금융과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융합·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개정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1.10일 배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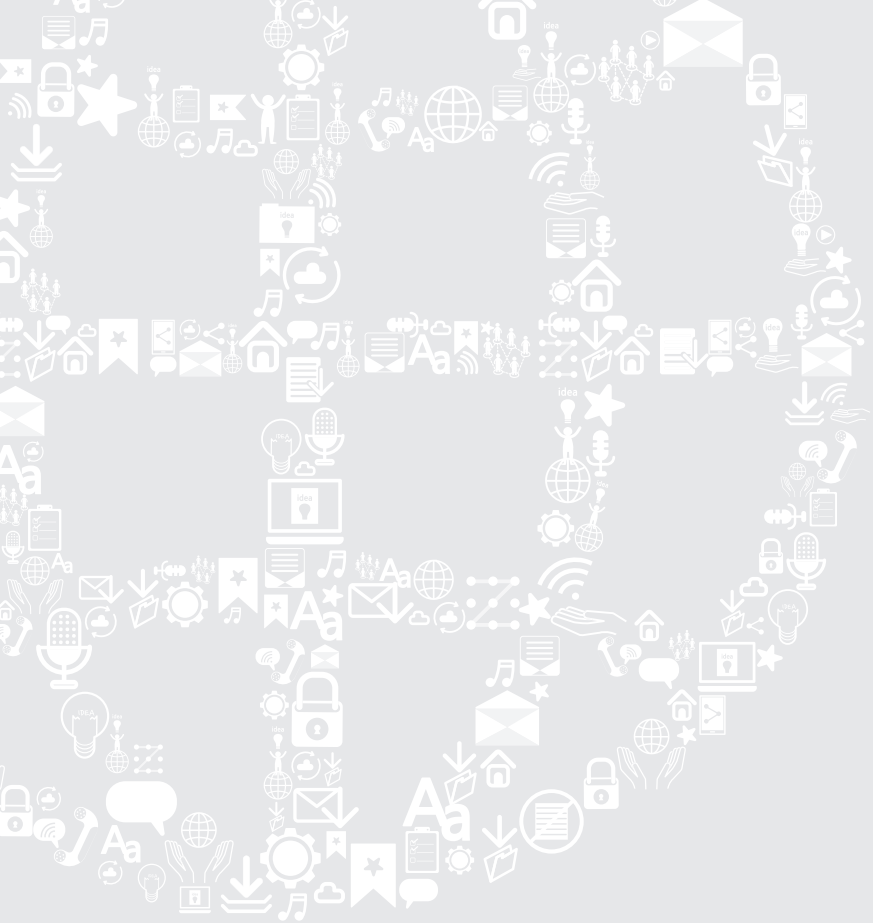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시행

- 추진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2020년 8월 27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9)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됩니다.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정부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 등을 열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1.)’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19.10.31.)

여권통문 (女權通文)의 날 지정·운영

- **추진배경**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일(1898. 9. 1.)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1.)로 기념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주요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함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2)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5.19. 개정)이 시행됩니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보도자료('20. 5.11.)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자격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추진배경**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시 처벌조항, 자격취소시 청문조항을 신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함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결혼이주여성들을 다(多)이음 강사로 선발하여 '상호문화 이해 교육' 등 다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다이음 강사인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친화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역공동체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위 사업은 2020년 9월에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19.11.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 **추진배경**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능동적, 자립적 일원으로서의 역량 제고 지원
- **주요내용**
 -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사회 수요자 발굴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실시
- **시행일** 2020년 9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이 됩니다.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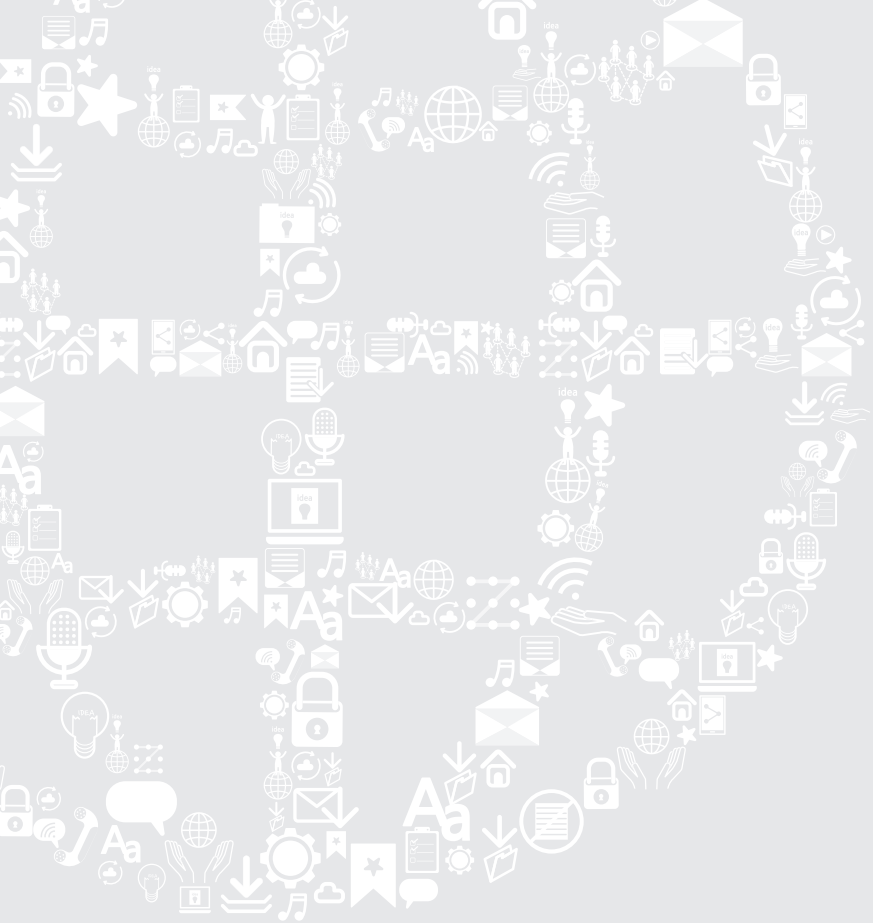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20. 4.30.)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 **추진배경**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착취 구조로부터 보호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5

「군소음보상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Before

종전에는 군소음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 소음피해배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판결

After

'20.11.27. 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구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Before

지금까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After

'20.6.11. 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됩니다.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3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31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시행일 : 2020년 6월 30일

'20.6.30.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군
- 신청시기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송부, 팩스전송,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 접수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지)청
- 제출서류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간술서 등 8종 증명서류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32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

'20년 6월 사회복무요원이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임무 외에 공통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5 방위사업청

자세한 내용은 p.37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

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Before

기존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재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After

'20.5.21.부터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합니다.



6 방위사업청·조달청

자세한 내용은 p.38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일반물자와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fter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20.7.1.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소음보상TF ☎ 02-748-5894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9. 11. 26. 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 피해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로, 당해연도 소음 피해에 대해 다음연도에 청구 및 지급
- 다만, '21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은 '22년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 ※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최초 조사대상(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은 '21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리고, 안정된 군사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 추진배경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매년마다 소음보상금을 지급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2

2020년 6월 11일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전면 시행됩니다.('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변경

■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사망보상금 현실화

● 전사 사망보상금

기존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7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60배

●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기존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4.2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5배

●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기존 : (개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배

■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 사항은 법률 공포일인 '19. 12. 10.부터 시행).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추진배경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

● 주요내용 • 일반 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 사망보상금 보상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
•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및 유족가산제도 도입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 단,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사항은 2019년 12월 10일부 시행 중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2)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99년),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16년)은 기 시행 중

■ 수급 요건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 (수급요건)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 (분할비율)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설정 가능
 - (수급기간) 연금 수급권자가 이혼 또는 퇴직 즉시 개시하며,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시까지 수령
 - (승계) 유족에게 승계 불가(분할연금 수급자가 군인 퇴직자 보다 먼저 사망 시 군인 퇴직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을 수령)
 - (기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 시에도 균등분할하고,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선 청구 가능
 - (적용대상)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을 한 사람부터 지급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044-202-5431)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당초,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도자료) “현역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 추진배경 상이를 입고 복무 중인 군인 등의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 단절 없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3)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이며, 9. 25.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2개(2020.5월 기준) 보훈위탁 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774)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추진배경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18. 6.28.)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군
 - 신청시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송부, 팩스전송,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 접수처 : 대체역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지)청
 - 제출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진술서 등 8종 증빙서류
- 시행일 2020년 6월 30일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 진료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이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임무 외에 공통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공통임무란, 환경정리, 행사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방역, 재난 등 긴급 업무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명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임무표를 작성하여 고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분야 효율적 지원
- **주요내용**
 -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통임무 신설
 - (일상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조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운영과 관련한 업무
 - (긴급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업무
 -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작성
- **시행일** 2020년 6월 12일(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및 복무관리 규정 개정)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1)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 **추진배경**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해운업체등의 장) 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 병무청 훈령 및 지침을 병역법으로 상향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 일자와 부대를 금년 12월에 알려줌으로써 다음해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안내

- **추진배경** 입영일자·부대의 조기 결정, 의무자 안내로 학업일정 관리, 취업·휴직 등 입영준비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입영신청 및 방법 개선
(당초) 다음해 '입영월' 선택,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안내(12월)
(개선)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입영부대 확정(전산시스템)
- **시행일** 2020년 7월부터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상시 시행합니다.

- '20년 7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설하여 1:1맞춤 심층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11월부터는 병무청누리집 '온라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시행해 병역의무자 누구나 본인의 자격이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거나 '심층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 복무와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1:1 병역진로상담	①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검사) ②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지원 안내·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①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②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①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군복·전투식량 시식 체험, 복무 중인 병사 이야기 등

• **신청방법**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개인/단체, '20. 7월부터 운영)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서식 - 기타서식(11번) 작성 후 팩스(1588-8999) 송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개선 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토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복무 중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범죄에 악용한 사례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금지. 단,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복무기관장의 월 1회 직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 (제15조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신설(별지 제28호)
 - 복무기관 실태조사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를 결함사항으로 반영(별표2)
- 시행일 2020년 6월 1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76)

2020년 하반기부터, 방위사업청이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에 나섭니다. (‘20. 5. 21. 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시행)

-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합니다.
- 기존에는 유휴시설 가동을 산정기준이 전년도의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2021년도에 용자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방산업체가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를 부담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 나서다”(5.25.(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산 유휴시설 용자지원 확대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산업체 조기 지원
- 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를 부담
 - 기업 대출금리(변동) : 중소기업 약 0.4~0.5%, 중견·대기업 최대 2.0% 이내
 - 유휴시설 세부 품목 : 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등
-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조달청 자재장비과 (☎ 042-724-7288)

2020년 7월 1일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됩니다.

-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 피복, 항공유 등이며, '20.7.1. 이후에는 기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합니다.
- 조달업무 이관 이후에도 조달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기존 방위사업청의 계약관련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6.30.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관리를 수행합니다.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추진배경** 정부조직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고려 방위사업청 물자류 조달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통해 경제적·효율적인 군수품 조달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본연 업무집중·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이관품목 대상품목인 급식, 피복, 장구류, 항공유 등 군수품 3천여품목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 수행
 - 조달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향후 2년간 기존 방위사업청의 계약관련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6)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을 위한 규격(안)을 제출한 이후, 행정소요로 인해 지연된 일수를 지체상금에서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계약업체의 국방규격(안) 제출이후 업체 책임과 무관한 행정소요(내부검토, 실무위/분과위 상정 등)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 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하면 이후의 청의 행정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면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 **추진배경** 업체의 국방규격(안) 제출이후 행정소요 절차로 인하여 업체에게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상존
- **주요내용**
 - 원칙 :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한 이후 행정소요기간에 대한 지체면제 허용
 - 예외 : 계약문서에 행정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 된 경우
- **시행일** 2020년 3월 27일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 02-2079-6922

개산계약에서 원가를 정산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 그동안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결정 시 정산원가에 업체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왔었습니다.
- 그러나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원가를 추가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로써 정산금액 결정 시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체결 시 협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참고 「계약특수조건 표준(5종) '정산' 규정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 **추진배경**
 -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제기
 -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성 인식
- **주요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를 정산한 후 이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
- **시행일** 2020년 4월 21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행정·안전·질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4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Before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의 서명이고, 전자서명 이후 내용변경이 없음'을 추정

After

'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51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Before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After

'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월 전으로 변경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조정절차 자동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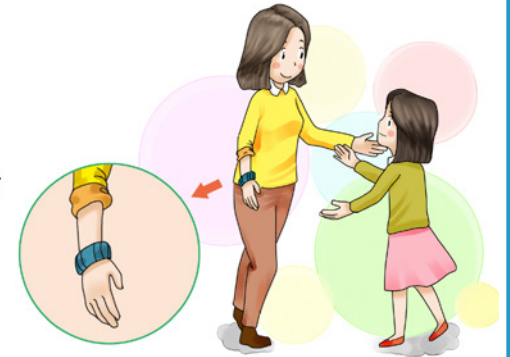
3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52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20.8.5.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신설 시행됩니다



4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53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Before

중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액은 2천만원 이하였습니다.



After

'20.9.25.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5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54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Before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After

'20.7.1.부터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을 금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6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59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20.11.27.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업무, 안전조치업무가 부여됩니다.



7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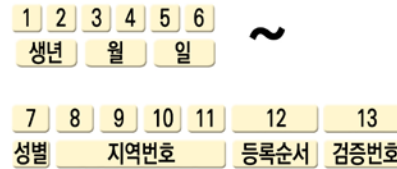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6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시행일 : 20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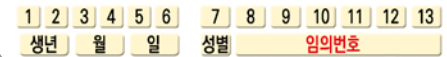
Before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습니다.



After

'20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합니다.



8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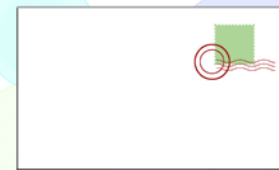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65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Before

종전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하였습니다.



After

'20년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합니다.



9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Before



After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0 소방청

자세한 내용은 p.80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9월 10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를 신설합니다.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11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8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Before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였습니다.



After

'20.11.20. 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467개로 확대 시행됩니다.



10 소방청

자세한 내용은 p.80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9월 10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를 신설합니다.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12 방송통신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84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시행일 : 2020년 7월

Before

지금까지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해지 지연 및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fter

'20년 7월부터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044-215-5181)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 **추진배경**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044-202-6446)

'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20. 6. 9. 개정 「전자서명법」 공포)

-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효력이 부여됩니다.
 - *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의 서명이고, 전자서명 이후 내용변경이 없음'을 추정
-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한편,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 **추진배경**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다양한 신기술전자서명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 공포('20.6.9.)
- **주요내용**
 - 모든 전자서명제도에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인증제 도입
 - 증명서 발급 전자서명사업자 전체의 가입자보호 강화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 044-202-6141)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20.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20.12.10. 시행).

-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됩니다.
 -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보도자료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사회전반에 만연한 종이문서 관행을 철폐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원칙) ①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및 서면요건 신설, ② 종이문서 폐기 근거 상향 입법,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
 - (예외)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503)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계약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 ※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을 공포한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 추진배경 주택임대차법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
 - 조정신청이 되면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843)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됩니다(*20. 2. 4.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피고인이 '전자보석'을 허가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을 보다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 ※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 적용
- 법원은 전자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고 보석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의 통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20. 1.)

전자보석제도 시행

- **추진배경**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미결구금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자보석' 도입
-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감독 및 위반 시 법원에 통보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79)

2020년 9월 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정상을 참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발생,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 * 7년 5천만원 → 7년 7천만원(법 제93조의2제2항), 5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법 제93조의3), 3년 2천만원 → 3년 3천만원(법 제94조)
 - 양벌규정 대상(행위자+법인 처벌)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양벌규정 대상이었던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외국인은 삭제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83)

2019.12.11. 시행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며, 2020.7.1.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부여 혜택이 종료되고,
- 2020. 7. 1. 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7월 ~ 9월 출국 시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10월 이후는 원 범칙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나, 범칙금 미납 시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초기 팝업창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 **추진배경** 2020. 7. 1.부터는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금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2019. 12. 11.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2020. 6.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부여
 - 2020. 7. 1.부터는 정책에 불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1~10년간 입국금지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843)

2020년 8월 5일부터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이 확대 시행됩니다(*20.2.4.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현재는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중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사범에 한정하여 전자감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해집니다.
- 한편, 가석방이 확대 시행되면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완화되고, 수형자 관리에 소요되는 국가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범죄인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 **주요내용**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중 특정사범에 한정되었던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에게 확대 적용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48)

기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 **추진배경**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 반영 및 법제정 후 5년 도과로 보완 필요
- **주요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현장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 방해시 처벌 가능
 -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 가능
 -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가능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 확대
 - 임시조치, 보호처분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행상황 통보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가능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심리치료과 (☎ 02-2110-38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4일 이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주요내용**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00-4060

2020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했던 방식이 사라지고, ‘비자발급 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으며, 7월 1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허가 시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대신, 앞으로는 ‘비자발급확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해당 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비자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비자스티커 폐지’ 추진
- 주요내용**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한 ‘비자발급확인서’를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비자발급 업무처리의 효율성, 예산절감 및 신청인 편의 증진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2. 24.부터 미국, 일본, 유럽 24개 국가에서 시범 운영 중)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2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조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률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이상), 유원시설(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클럽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그 밖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안전교육의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추진배경**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6)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생년	월	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생년	월	일		성별	임의번호								

-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44-205-28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 02-2100-2423)

2020년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20. 2. 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와 더불어,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으로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되고,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국민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일반상거래기업 조사·처분권만 이관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 **추진배경**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 **주요내용**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제도화 등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적용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044-205-6241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의 연차별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체험 부스를 통해, 연차별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들려주세요.
-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에 반영되며, 국민의 생활속에서 연구개발성과를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아이디어로 만든 안전제품 보러오세요' 보도자료(2019년 9월 26일)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 **추진배경** 2018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9년부터 진행된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국민 역할을 사업 제안·기획에서 평가 단계까지 확장함에 따라 국민 안전역량 및 연구성과 체감도 강화
- **주요내용**
 - 연구 과제별 운영되는 체험 부스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성과를 체험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성과 견인
 - 국민 의견이 수행기관-전문가-총괄기관 논의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면, 다음해 부스에 판넬로 제작되어 홍보
- **시행일** 2020년 9월 23일~9월 25일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044-205-3282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합니다(19.12.10.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됩니다.
- 또한, 지휘감독·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는 '사전협의제'가 도입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 시행

- **추진배경**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98.2.24.)된 이후,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국정과제(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세부 이행과제)
- **주요내용** 경찰(해경청포함)·소방·운전직공무원 가입 허용, 가입금지대상 직책 및 업무에 대한 기관장과 직장협의회 협의의무 부과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23)

온천수를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이용시설이 확대됩니다.

- 과거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산업·공중시설(양어장, 온실, 화장품 제조 등)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료기관(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서도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 온천법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 활용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병원에서도 치료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 추진배경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주요내용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 시행일 2020년 6월 23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6406)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위 사업은 2020년 9월에 시행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 중인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 도착 시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열람 가능
 - 모바일 전자고지를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 시행일 2020년 9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6월 2일부터 실시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20. 5.2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를 변경하고 벌금형 삭제 및 징역형 상향 등 처벌 강화,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시행일** 2020년 6월 2일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시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정성필수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됩니다.

-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 → 20%) 하고,
-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사업에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 필수제안 정량평가 항목 신설 : ’20.4.23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보도자료>“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 **추진배경**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대한 변별력 제고를 통해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정성평가 등급별 환산점수 간격을 10%에서 20%로 강화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 필수제안 적용대상을 일반평가의 사업금액 2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20억원 미만 사업에도 적용
- **시행일** 2020년 8월 1일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

2020년 9월 1일부터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에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개선됩니다.

-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차령(차의 나이) 등의 기준에 따른 장비투입비율 평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평가로 변경됩니다.
 -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은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에 대한 7가지 분야(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운행,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 법규위반)에 대해서 종합평가 후 등급 공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공시 자료로 5단계(1등급 ~ 5등급) 등급에 따라 최고 10점 ~ 최저 2점을 부여하며, 공시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를 부여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0-10호)"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 **추진배경** 법에서 정한 '차령'보다 강화된 '차령'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차령'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여객운송용역 기술능력 평가 시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적용
 -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93)

2020년 7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이 변경됩니다.

- 수기로 진행되는 고용평가 방식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각 수요기관이 증빙서류를 수기로 취합·평가할 필요 없이 온라인 상으로 평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현
-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평가하고, 국민연금도 가입 제외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으로 인정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20-11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 **추진배경**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각 수요기관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하고 평가해야 하므로 많은 행정력 소요
- **주요내용** 각 수요기관이 증빙서류를 취합·평가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온라인 방식)로 평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현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93)

2020년 7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이 변경됩니다.

- 평가항목 중 '만족도'(40점) 항목을 삭제하고,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 신설, 기술 능력은 17점 → 25점으로 상향됩니다.
 - '품질관리'(25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하여 확대
- 배점형태로 운영되던 '신인도'를 감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점되도록 변경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909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추진배경** 품질 관련 평가항목인 '품질만족도'의 경우 수요기관이 검사단계에서 평가한 주관적인 지표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계약이행 실적 평가의 경우 배점 3점으로 비중이 작아 실효성 부족
- **주요내용**
 -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 신설, 기술능력은 17점 → 25점으로 상향
 -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하여 확대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됩니다.

근거 법률	현행 시설	추가되는 시설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 교육법	초등학교/특수학교	대안/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
학원법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법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 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12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 규정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4)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이에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4)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 ▣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4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됩니다.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버스에 부착할 수 있으나,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위반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신설
 - 동승보호자 미탑승했음에도 표시를 미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도로교통법에 신고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를 정의하고, 통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추진배경**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도만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 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
- **주요내용**
 -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2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됩니다.

-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추진배경**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장애가 됨
- **주요내용**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0611)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 **추진배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투입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으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긴급자동차의 활동을 위축시킴
-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
 -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650)

'19. 7월 변경된 장애등급제*를 반영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 됩니다.

- *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1~6등급 → (개편) 장애의 정도(2단계)
-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 * 도로교통공단에서 '13년부터 8개 시험장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전교육(16시간)을 실시
-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육대상 확대
- **주요내용**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소방산업과 ☎ 044-205-7507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
 - ※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예정임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참고 소방청홈페이지)보도자료)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 **추진배경**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제고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직접 도급받아 책임시공을 담보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원칙)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 (예외)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벌칙) 300만원이하 벌금
- **시행일** 2020년 9월 10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납니다(’20. 5. 19.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을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합니다.
 -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은 본 책의 신규대비표(p.221)에서 확인 가능
- ▣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②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③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
- **주요내용**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들을 추가하여 467개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부패신고자임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잠정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추진배경**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
- **주요내용**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7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신청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법령상 신청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다만,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아니거나, 신청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20. 3. 19.)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 **주요내용**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동의만으로 증명서류 제출 면제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출서류	공동이용 가능여부	시행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0. 7. 1. 이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X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분부터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X	
소득금액증명	○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37)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 지금까지 각각 처리하던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됩니다.
 - 이번 서비스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 이번 도입되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자인 KT, LGU+, SKB, SKT, KT-Skylife 등 5개 사가 우선 시행하고,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1.7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보도자료>"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도 사업자 전환 쉬워진다"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으로 인한 해지 지연 및 이종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시행사업자) KT, LGU+, SKB, SKT, KT-Skylife
 - ※ '21.7월 시행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 (적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 **시행일** 2020년 7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문화·체육·관광



http://whatsnew.moef.go.kr

1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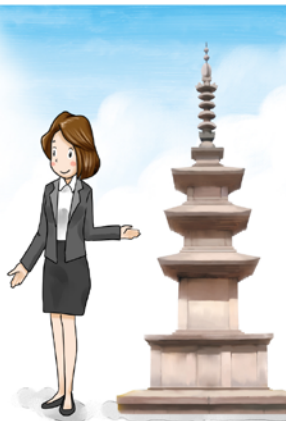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88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20.5.27.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교육 주요정책의 시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매 3년)
- 문화재교육 지원센터 지정
- 우수한 문화재 프로그램 인증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숙박 가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3)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단위 일반 국민들도 숙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각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 가족단위 등의 개별 숙박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숙박 가능

- 추진배경 청소년수련원에서의 일반국민의 개별적인 숙박은 금지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필요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원을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단체, 청소년 단체 등 단체 숙박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개별 숙박도 허용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은 각 수련시설 별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 가능)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 042-481-3142)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교육 주요정책의 시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화재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교육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됩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교육 실적과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수준 등을 심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합니다.
- 문화재교육 기관과 단체는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의 인증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에 인증을 신청하여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체계 마련

- 추진배경 문화재교육 활성화
-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교육의 범위와 유형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신청 절차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920)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진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문화재보호법」'19.11.26. 일부개정, '20.11.27. 시행).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시행 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 추진배경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국민 불편 해소,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미비 보완 필요
- 주요내용
 -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간소화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등 제반 절차의 간소화
 -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반출 허가된 문화재의 통관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도모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3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 하며, 해당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성적증명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 (영업의 승계규정 신설) 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 20일 이내 신고
- (변경신고 기한) 상호·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
- (과태료)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신고, 승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반 회수별 과태료: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20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개선

- **추진배경** 문화재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증명서류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성적증명서
 - 문화재매매업 승계 규정 신설
 - 문화재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 지위 승계 시 20일 이내 신고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공·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 02-6450-3849

공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공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어, 허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 지금까지는 공·능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공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를 거쳐, 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능유적본부장이 공·능문화재 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 받아,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하여 관할 지자체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공·능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공·능 소관 문화재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공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허가처리 및 민원대응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신속성 및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공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39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4

문화재의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신설), 온돌공사업(신설)
(현행)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 (개정) 기술자 -명, 기능자 2명

▣ 또한, 위의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6

문화재수리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를 위하여 매년마다 그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년 1회) 또는 수시(필요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적정 시설을 마련하여 비축할 예정입니다.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 중 / 경북봉화, '23년 완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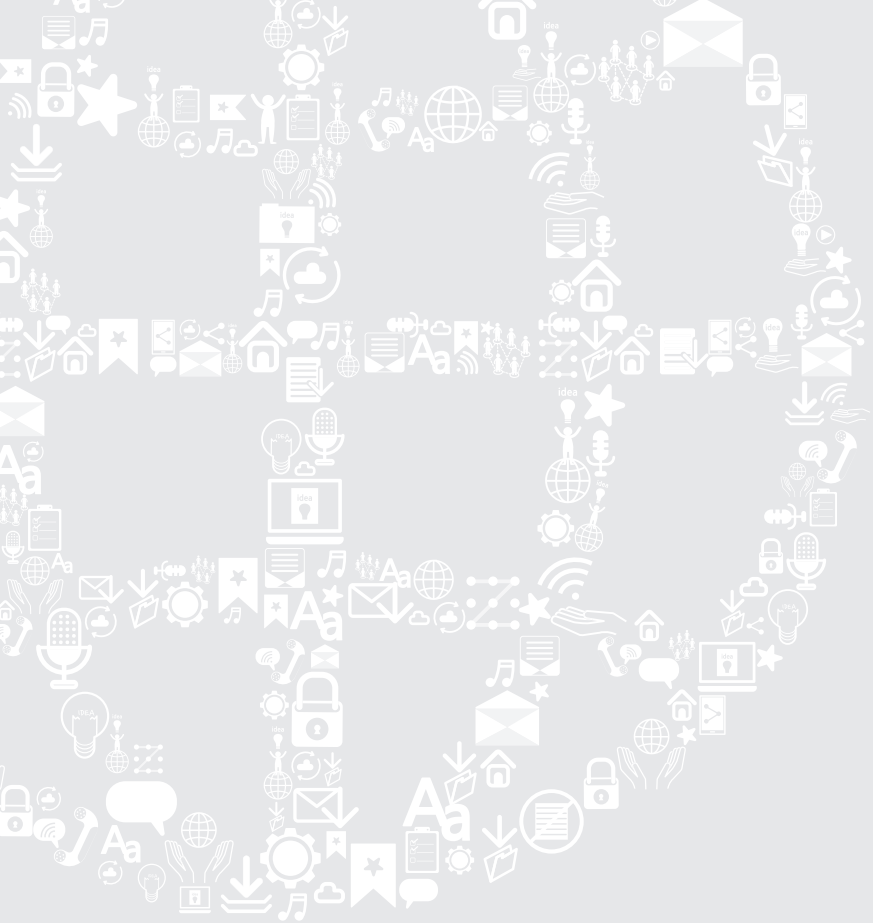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 **추진배경**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현장배치 기준 및 등록 요건 완화
- **주요내용**
 - 문화재의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신설), 온돌공사업(신설)
(현행)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 (개정) 기술자 -명, 기능자 2명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 **시행일** 2020년 6월 4일

전통재료 수급·관리 계획 도입

-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2.3.공포)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수급이 곤란한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일** 2020년 6월 4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1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20.8.12.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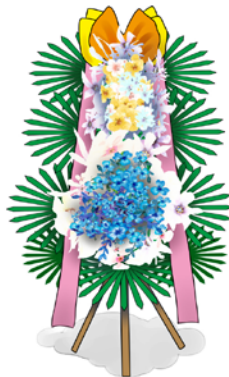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2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20.8.21.부터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재사용 화환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3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Before

연면적 기준(230m² 미만)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변경시 신규 신고불가



After

'20.8.12. 부터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Before

지금까지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및 등록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After

'20.8.12.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동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5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15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20.8.28.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16

항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Before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
(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After



'20.9.1. 부터 5대 대형항만에 항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7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17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Before



After



많은 인원 방문자제

개인 차량시설 거리두기

신체접촉 X

음식물 섭취 최소화

물놀이 백사장 활동

체액 배출금지

8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18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Before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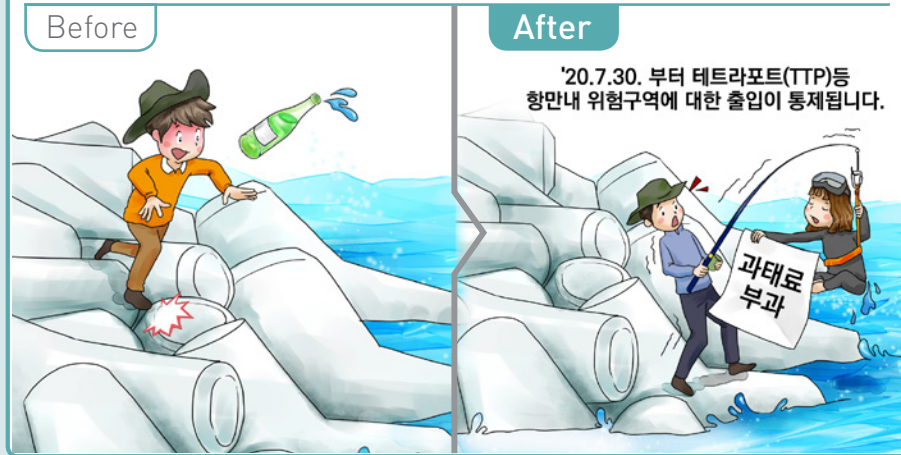
'20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9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19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시행일 : 2020년 7월 30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 현행 : 유효기간 없음
 -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경영체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 추진배경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특히, 대도시) 최소화 및 경영정보 현행화(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
 - '20. 2.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주요내용
 -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2)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추진배경**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19. 8.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중(5.8~6.18, 구체적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포함)
-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 초과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불가능 → (개정) 양수양도 가능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표시의무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

■ (신고요건)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사전 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②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

-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 허용

*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 또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2~3)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및 동물장묘시설 확장로 개수 제한 폐지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①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탐지견
- ②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③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여 동물장묘 시설의 확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④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 ①~④은 2020년 8월 12일부터, ⑤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 '20. 2. 11. 「동물보호법」개정
- **주요내용**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20. 8. 12. 시행)
 - 신고포상금제도 폐지('20. 8. 12. 시행)
 - 동물장묘시설의 확장로 개수 제한(3개) 폐지('20. 8. 12. 시행)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20. 8. 12. 시행)
 -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완('20. 10. 1. 시행)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추진배경**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20. 2. 11. 「농어촌정비법」개정)
- **주요내용**
 - (사전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제86조제2항제2호)
* (현행)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거주 → (개선)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
 -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제86조제2항제4호)
-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에서 신고 허용(제86조제3항)
*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 (직권말소) 민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가 사업장을 직권폐업 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정보제공의무 및 직권 말소 근거 신설(제86조제6항 및 제7항)
 - (점검확인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6조의2제4호)
*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
 - (표시 의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제86조의2제5호)
*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표시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현행 : 65세(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 상향

-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20. 2.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을 70세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하여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선 :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농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
 - * '20. 2. 11. 「농어촌정비법」개정
- **주요내용**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절차 마련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농업용 면세유 배정 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부터 적용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현행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0. 2.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지원 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추진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20. 3. 24. 「축산법」 개정
- **주요내용**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 (이관방향)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원유(原乳,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작년 12월에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19.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19. 12. 16.)공통고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 **주요내용**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하여 인증이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도록 ‘유기’ 인증·표시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 * 현행 : 유기원료 95% 이상 → 개정 : 유기원료 95% 이상, 70% 이상(인증마크 사용 불가)
-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 * '19. 8. 2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주요내용**
 - “유기 70%” 인증제 시행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등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2~3)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됩니다.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 *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추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5)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가능
 - * (현행) 농지법에 따라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 가능
-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높은 자본 투입, 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추진배경**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 * '19. 8. 27. 「한식진흥법」 제정
- **주요내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에 적합한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을 감안,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현행법상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
 - * '20. 2. 11. 「농지법」 개정
- **주요내용** 임대차 허용사유에 고령농업인(60세이상·5년이상 자경)의 농지 임대를 추가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지연금전용계좌 도입

- **추진배경**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농지연금전용계좌 도입
* '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 **주요내용**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3)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해경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0.4.8.)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건전한 어업질서 확보 및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에 필요한 법령 시행
-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조업어선의 출입항 관리, 집중 관리해역 조업·항행 제한·의무 등 규정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20-5835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0.1%)을 적용합니다.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내·외항선이나 툰수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 적용)

※(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 (외항선박) '20.1.1.부터 0.5% 적용
- (내항선박) '21년도 해당선박의 검사일부터 0.5% 적용
- (배출규제해역) 1단계('20.9.1.) 정박·계류시, 2단계('22.1.1.) 해역 진입시 0.1% 적용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공포('19.4.2), 시행('20.1.1./9.1)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 추진배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 주요내용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1%) 적용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53

2020년 5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운영관리 대응지침”에 따라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수욕장 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반을 구축하여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 해수욕장 이용자는 개인 파라솔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차양시설 설치 간격, 신체접촉 주의, 체액 배출 및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

참고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용자)

- 주요내용
 -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6)

2020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 **추진배경**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영세 어민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어 양식기술 활성화 등 어려움
- **주요내용**
 - 개선내용
양식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하여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
 - 기대효과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2020년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Tetrapod, TTP)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됩니다.

- 최근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들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테트라포드 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TTP 추락사고 건수(사망자): '16년 75건(10), '17년 92건(9), '18년 78건(5), '19년 85건(17)
- 이에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항만법” 공포(‘20.1.29), 시행(‘20.7.30)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2020.3.30.)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 **추진배경**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의 출입통제 조항을 ‘항만법’ 내에 신설
- **주요내용**
 - 항만구역내의 위험구역에 대한 시설물 출입통제 근거 마련
 - ①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 ②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 ③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2

2020년 9월부터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수도권과 서해안권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 2016년부터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1대)을 운영하여 부산,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바다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왔습니다.
- 올해는 이동교실 차량 2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교육 지역을 수도권 및 서해안권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현황 및 확대계획

• **추진배경** 콘텐츠가 탑재된 이동교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미래세대(초등학생) 해양환경 소양 증진

• **주요내용** 연도별 추진실적('16~19년) 및 계획

구분	2016년 (9월 시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131회 3,634명	349회 11,518명	282회 7,975명	347회 8,386명	300회 8,000명

• 권역별 교육확대 및 균등 해양환경 교육을 위해 3개 권역* 교육차량 배치
* 경남권(기존), 수도권(신규), 서해권(신규)

• 미배치 권역은 기획프로그램을 운영, 전국 해양환경교육 수요에 대응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2020년 9월 25일부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는 폐기물해양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검사를 받는 등 새롭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하여 폐기물해양배출자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 사업체 인수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해양환경관리법” 공포('20.3.24), 시행('20.9.25)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 **추진배경**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새로이 폐기물 해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주요내용**

-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2020년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해양에 인접한 하천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하천으로부터 해양에 쓰레기 등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당 해양폐기물 등을 수거·정화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원인자 책임원칙이 강화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헌법행정 검색)*"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19.12.3), 시행('20.12.4)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배경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으로 해양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조치 필요
- 주요내용
 -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해역관리청 등은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거·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18)

2020년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 기존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물코 크기, 그물 길이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의 제작, 판매 및 어선 적재만이 금지되었으나,
- 불법어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불법어구를 수입하거나 보관, 운반 및 진열 등 유통행위까지 금지합니다.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0. 3. 6.)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추진배경 수산자원 남획 및 폐어구 과다 발생 등을 유발하는 불법 어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및 유통 금지 추진
- 주요내용
 - (기존) 불법 어구의 제작·판매·적재 금지 → (개정) 불법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또는 적재 금지
 -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금지된 어구의 제작·판매·수입·유통 등 가능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3)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어업인들과 낚시인들만 금어기를 지키고,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20.5.15)' 보도자료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2020년 8월부터 단위 수협이 납부하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단위수협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됩니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원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만큼의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감면 혜택 단위수협 : 90개(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수협 18개, 가공수협 2)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 "수협구조개선법" 공포('20.2.18), 시행('20.8.19)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 **추진배경** 단위수협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추진
- **주요내용**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단위수협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 도입
-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8)

2020년 8월부터 여객선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선장, 선원,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

- 기존에는 여객선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었는데,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해운법” 공포(‘20.2.18), 시행(‘20.8.19)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추진배경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객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 주요내용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1, 5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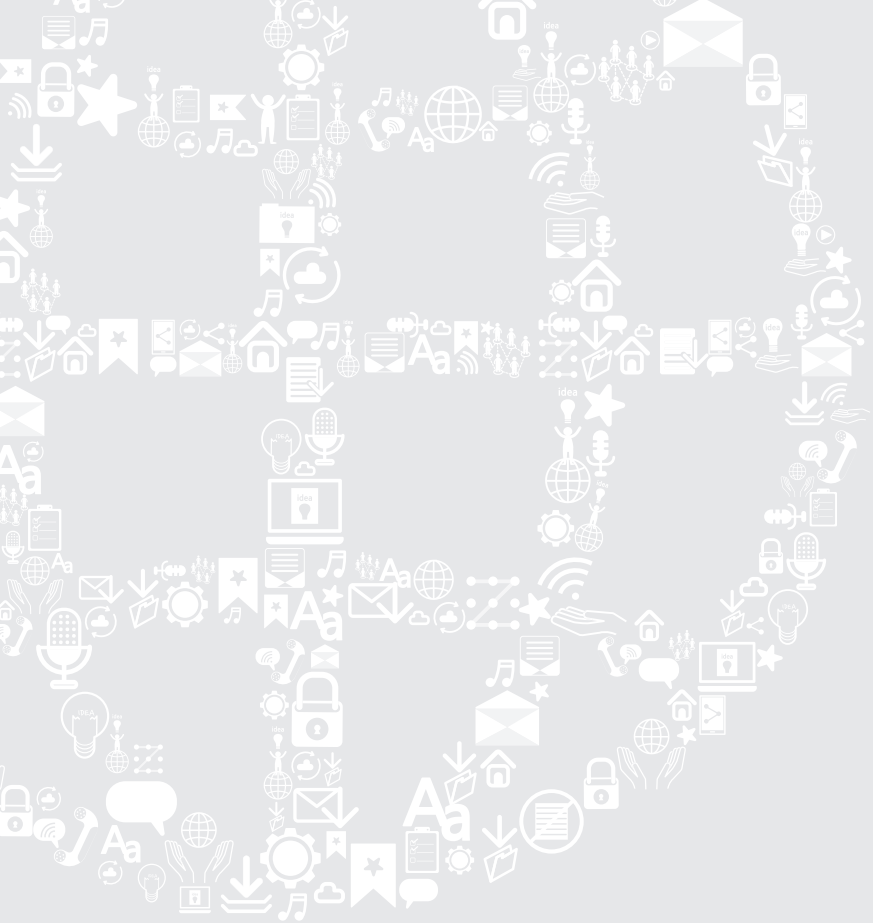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2020년 8월부터 선사에서 실시하는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계약이 의무화 됩니다.

-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선박직원법” 공포(‘20.2.18), 시행(‘20.8.19)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구분하고, 선박소유자의 해기사 실습생 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 준수(제21조)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고시 예정(‘20. 8월)
 -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방법·기간·시간 등을 포함함(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예정(‘20. 8월)
 -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미준수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
 -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1조)
-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3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Before

종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대상 지역 및 활동 유형이 한정적이었으며, 철새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fter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 하였습니다.



2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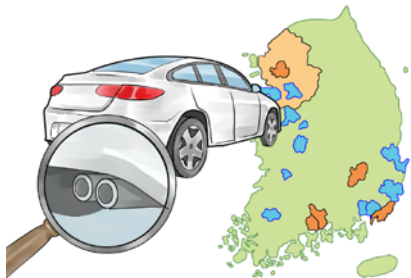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3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시행일 : 2020년 7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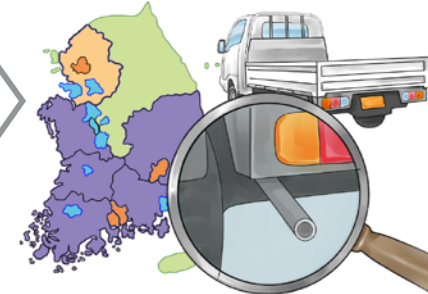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은 34개 지역에 한하였습니다.



After

'20.7.3. 이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7개 지역으로 확대시행됩니다.



3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44

예·특보 체계 개편

시행일 : 2020년 5월 15일

Before

지금까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fter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등 특보제도를 개선합니다.

초단기·단기예보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공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 발표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4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45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시행일 : 2020년 1월 30일

Before

종전에는 웹·모바일웹 서비스를 통해 위험기상정보 및 지진·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fter

'20년 1월부터 실시간 날씨정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사용자 위치의 상세 날씨정보와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나 지자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벗짚 존치, 벼 미수확 등 철새보호에 활용되어 온 제도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으로,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을 다각화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보상토록 했습니다.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깨끗한 물·토지 제공 등의 활동에 민간 참여가 촉진되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호지역 지정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행

- **추진배경** 생태계는 다양한 혜택 제공(생태계서비스),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 하는데 한계,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민간차원 대응 요구,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개념) 정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 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 및 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 * 조성·관리 등 필요한 금액,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 보상
 - (해외사례) 코스타리카*·미국·EU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 (코스타리카) 온실가스 감축,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 복원 및 조림 시 비용 지급(국토 산림면적 증가 20%→50%)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8)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20.7.3일부터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20.7.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20.7.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대상지역(38개 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대상지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는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 **추진배경** 대기관리권역 중 '20.4.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38개 지역은 '20.7.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등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
 -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
 - 대기관리권역 중 시·도 조례 제·개정 및 정밀검사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38개 지역은 정밀검사 시행일을 '20.7.3일 이후로 조정
- **시행일** 2020년 7월 3일부터(특정경유자동차)
2020년 7월 3일 이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기(이외 자동차)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하수관로는 상수관이나 가스관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또한,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해 허가·신고가 취소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불법 행위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0.5.4)'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추진배경 도시지역의 악취 및 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적 정비
- 주요내용 •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원활한 재정 집행 등 도모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 처벌 강화

- 추진배경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 및 불법 수출입 행위 방지
- 주요내용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 등 대여금지(제10조)
•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22조의2)
•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제22조의3)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044-201-6671

2020년 하반기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확보하게 하여 환경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대기·수질분야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업무의 전문 인력인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35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 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해당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 분석사 의무 고용

- 추진배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을 의무 고용
- 시행일 2020년 7월 17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추진배경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
- 주요내용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도급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 영업자는 도급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급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변경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4)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됩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등)는 수질기준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수도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과 상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 주요내용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시 도급계획,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급신고서 제출
 - ※ 도급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규정이 없어 도급신고서 재제출
 - (개정) 도급 변경신고 규정 신설, 변경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변경신고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607호)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추진배경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수질기준 위반 내용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신설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1)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등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능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응여부를 확인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처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며,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에 같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 최대 2억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 폐수처리업 관리강화는 지난 '19.11.26.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이며, 현재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며, '20.11.27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 추진배경** 타 사업장의 고농도 폐수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 주요내용**
 - 폐수처리업 허가제 도입,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신설, 수탁폐수 혼합처리시 반응여부 확인의무 부여,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 등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44-201-704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습니다.
- 2020년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 추진배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 등에 벌칙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20년 10월 17일
※ 세부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참고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물산업진흥법」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20년 5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최근 제·개정법령 > 물산업진흥법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실시

- 추진배경 확대되는 세계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
- 주요내용
 - 경쟁우위가 가능한 유망 중소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혁신형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
- 시행일 2020년 5월(공모·접수), 6월(평가·지정)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044-201-7662)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홍수특보 발령지점과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확대 운영합니다.

-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하였고, 특보발령은 강수로 인한 하천의 수위상승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나누어 대국민 긴급재난정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홍수특보와 함께 하천 내 공원, 주차장, 천변도로 등 취약지점의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 정보는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90개가 늘어난 409개 지점으로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방재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홍수예보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 본격 운영됩니다.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24시간 위험감시

- 추진배경 홍수특보 및 실시간 침수정보 제공을 통한 도시방재활동 지원
- 홍수예보지점 연차별 확대 현황

홍수예보	'18년	'19년	'20년	비고
홍수특보지점	55	60	65	
홍수정보지점	235	319	409	

* 홍수특보·정보지점 확대계획은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홍수예보운영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초단기 예보는 6배 더 상세히(60분→10분 간격), 단기예보는 3배 더 상세히(3시간→1시간 간격) 서비스합니다.

	기존	개선
초단기예보(6월)	6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	6시간까지 10분 간격으로 제공
단기예보(11월)	내일, 모레 예보 3시간 간격 제공	내일, 모레 예보 1시간 간격 제공

2020년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특보 제도를 개선합니다.

■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각각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표

■ 서울지역의 위험기상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보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참고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 보도자료 > 2020년 여름철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예·특보 체계 개편 시행

- **추진배경** 초단기·단기예보를 시간적으로 상세화하여 예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특보체계를 개선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초단기 및 단기예보 시간적 상세화 추진
 -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마련 및 시범 운영
 -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운영
- **시행일** 2020년 5월 15일
※ 초단기예보 상세화(6월 말) 및 단기예보 상세화(11월) 연내 시행 예정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0)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정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알리미' 앱을 운영합니다.

※ '날씨알리미'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중요 기상특보, 지진·지진해일 등을 앱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 사용자 주변의 날씨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거나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지역 예보관이 직접 작성하는 날씨알림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원하는 지역, 수신시간에 최신 날씨정보를 알림 메시지로 제공합니다.

실시간 기상알리미 '날씨알리미' 운영

- **추진배경** 위험기상 및 지진·지진해일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사용자 위치기반의 위험기상 알림서비스
 - 지역 예보관이 직접 '날씨알리미' 메시지 제공
 - 사용자 설정에 따른 맞춤형 날씨정보 서비스
- **시행일** 2020년 1월 30일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 02-2181-0268)

2020년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수준과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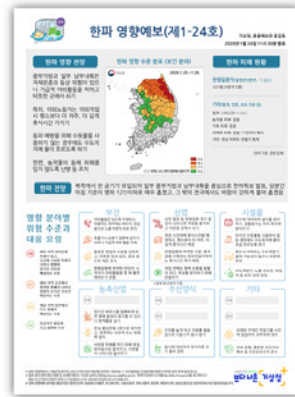
※ 분야(6개):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전력 등)

※ 위험수준(4단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예를 들어, 시설물은 동파가능성, 수산양식은 저수온 정보 등 분야별 관계기관의 기준을 연계하고,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한파 위험수준을 제공합니다.

■ 특히, 보건 분야는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3개 권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상대적인 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3개 권역: 남·동해안, 제주도산지 / 제주도(산지 제외) / 그 외 지역



한파 영향예보 통보문 예시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기상+ > 육상날씨 > 위험기상 > 영향예보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 **추진배경** 한파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시행
- **주요내용**
 - (대상지역) 전국 시·군
 - (제공기간) '20년 11월~'21년 4월
 - (발표기준) 보건 분야 관심단계 이상 예상 시
 - (발표시각) 전일 오전 11:30(일 1회)
- **시행일** 2020년 11월

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기상청 기후예측과 (☎ 02-2181-0460)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월별 평균기온 전망을 제공하는 장기예보(1·3개월전망)에 이상기후전망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3개월전망에 이상고온·이상저온 일수 발생확률 정보 등 월간 이상기후전망과 통합해 2020년 5월 22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전망에는 주간 이상기후전망정보를 통합하여 2020년 11월 23일부터 제공합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날씨 > 장기예보

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 통합 제공

- **추진배경**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전망 정보 요구가 증대
- **주요내용**
 - 장기예보(1·3개월전망)에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발생확률 등)을 통합하여 제공
- **시행일** 2020년 5월 22일(3개월전망), 11월 23일(1개월전망)

내가 필요한 지진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 02-2181-0082)

2020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지진규모, 진도, 지역 등에 대한 지진정보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TV자막,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로 정보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 지진통보는 규모2.0 이상, 재난문자는 지역기준 규모3.0 이상 등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선택한 정보만 수신됩니다.
 - ※ 규모, 진도, 지역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며, 기본설정은 재난문자 기준 적용
- 다만, 지진조기경보에 해당하는 지진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지진 정보가 전달됩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설정 기능 적용

- **추진배경**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지진정보를 사용자별 수신정보에 대한 선택기능 적용을 통한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규모선택(지역, 해역별 2.0이상, 3.0이상, 4.0이상)
 - 진도선택(진도 I, 진도 II, 진도 III, 진도 IV, 진도 V, 진도 VI 이상)
 - 지역선택(현재 위치 또는 광역시도)
 - 기본설정(지진재난문자 기준 적용)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5.0 이상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이상 ~5.0미만	규모 4.5이상 ~5.0미만	전국	
규모 3.5이상 ~4.0미만	규모 4.0이상 ~4.5미만	발생 위치 기준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이상 ~3.5미만	규모 3.5이상 ~4.0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예정)

상세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3)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유관기관의 위험기상 방재지원을 위해 보다 상세한 해양기상 실황·예측정보를 제공합니다.

- 파고, 바람 등 해양활동에 필수적인 해양기상 실황정보와 향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 그리고 해무(바다안개)에 대해서는 48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신규로 제공하여 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합니다.
- 또한, 2020년 7월부터 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위해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정식 서비스합니다.
- 기존 해양기상방송(무선 FAX)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A호를 활용해 217개의 해양 기상정보를 디지털정보로 제공합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또는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 **추진배경**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지원
- **주요내용**
 - 해양기상 실황·예측정보 제공(2020년 8월)
 - 파고 및 해상풍: 현재부터 +12시간까지 예측정보(1시간 간격, 24회/일)
 - 해무: 현재부터 +48시간까지 예측정보(1시간 간격, 4회/일)
 - ‘해양기상 위성방송’ 정식 서비스(2020년 7월)
 - 일기도, 위성영상 등 14종 산출물 217개 이미지 제공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 『기상박물관 개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1)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기상과학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하고자 2020년 10월 『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개관합니다.

- 주요 유물로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제329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국보 제330호)’를 비롯한 ‘관상감 측우대(보물 제843호)’가 있으며, 총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 문헌상 세종대 측우기(1442년)가 유럽보다 200여 년 앞선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기구지만 왜란 등을 겪으며 소실되었고,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로 그동안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 측우기와 측우대를 상설로 일반 국민에 선보여, 우리 조상의 훌륭한 기상과학 문화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기상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상박물관 주요 유물〉

명칭	제작년대	국보·보물	비고
공주 충청감 측우기	1837년 (헌종 3년)	국보 제329호	- 현존 유일 측우기 - 세계 최초 강우량계발명의 증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1770년 (영조 46년)	국보 제330호	- 제작 연도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측우대
관상감 측우대	미상 (1441년 추정)	보물 제843호	- 조선시대 초기 측우대로 추정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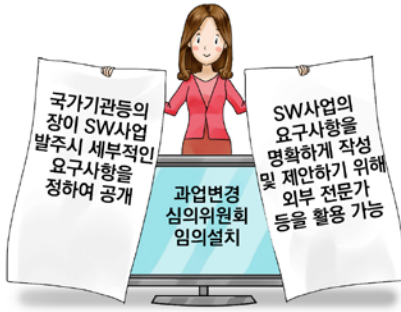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53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시행일 :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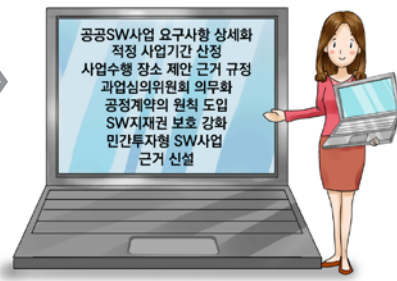
Before

짙은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fter

2020년 12월부터는 과업범위 확정 및 과업변경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고, 공공·민간 분야의 SW사업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이 본격 적용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16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Before

지금까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가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After

'20.8.12. 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과 (☎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 044-202-6331)

2020년 12월부터 공공SW분야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개선되고, 민간에 공정거래 원칙이 적용·확산됩니다.('20. 5. 20.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회통과)

-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발주시점부터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행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 SW사업자가 원격지에서도 SW개발을 위해 작업 장소를 제한하면, 발주기관은 제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 국가기관 등에게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과업 변경의 적절성,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 포괄적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민간부문도 계약서 작성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 공정계약의 원칙을 도입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자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출 요청 시 국가기관 등의 승인이 원칙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도입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 추진배경 2000년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만 해온 현행법을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를 SW가 선도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SW산업 지원,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 ⇒ SW수분야 지원, 민간SW사업 까지 공정거래 원칙 적용 확대

현행(5장 48개조)	개정(8장 78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산업에 국한 • 공공SW사업 규제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융합 촉진, R&D 지원, 지역SW 진흥, 교육 확대, 인재 양성, SW안전, 민간 투자 등 SW 수분야의 경쟁력 확보 ▶ SW융합 촉진, R&D 지원, 지역SW 진흥, 교육 확대, 인재 양성, SW안전, 민간 투자 등 SW 수분야의 경쟁력 확보

• 시행일 2020년 12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044-203-4073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2,990개)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이후 시행됩니다.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 044-203-4632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 시행 '20.10.8)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권자로 하여금 소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0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보도자료

미처분이익 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 등

- **추진배경**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불인정하여 외투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외투인정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제2조)
 - IMF·OECD 등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며,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재투자를 유도
 - (현금지원 확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제14조의 2)
 - 기존 조특법상 신기술(173개)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제품업종 (2,990개) 추가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관리권자는 소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국가·지자체는 효과적 계획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044-203-4832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판정관련 자료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자가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중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으로 자가판정은 할 수 없으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원자력전용품목 판정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업무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 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 **추진배경**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자가판정시 사전교육 이수 및 판정관련 정보를 등록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 **시행일** 2020년 6월 1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4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법 제26조제2항의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는 '20.7.1부터 시행

-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보고체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입법예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행규칙도 해당)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국·공유재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감감 등 제도 개선
 -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행, 점검방법 등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10월 1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1~'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p씩 상향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입법예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규정 개선

- **추진배경**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법령 개선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을 상향 조정
 -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보급 여건 개선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4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 법 제7조의3 제1항의 인허가 의제에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1.1.1월부터 시행
-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 적용
-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하되, 사망, 파산 신청,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 중간복구 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계절적 요인, 부분 복구공사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시켜 전기차 충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입법예고 >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행규칙도 해당)

신재생 보급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

-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 법령 정비
- **주요내용**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의무화,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등 부작용 완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2021년 1월 1일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044-203-5371)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 8. 5. 시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하여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하였으며,
-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 **추진배경**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구역 축소, 통항 불편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 어민들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마련
 - 지원금의 배분방법 마련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2, 5233)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됩니다.

-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배포예정('20.8)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
- **주요내용**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등록 요건
 -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를 갖출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 필요
 -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갖출 것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044-203-5193)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열수송관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안정적 열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6)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15~'19년) 총 24건에 55명(사망 20, 부상 35)의 인명피해 발생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개정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추진배경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알림·뉴스 > 보도자료 >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포함하여 판매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보일러에 포함된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제외: 옥외에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제12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8)

2020년 8월 5일부터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19. 6. 24. 최인호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유소는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시설에 해당하며,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주유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 후 휴·폐업 정보를 공유 한다면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다만, 휴·폐업신고 및 토양환경보전법 대상시설 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 법률개정 없이도 지자체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 가능합니다.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시행

- 추진배경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043-870-5413)

「제품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 6. 11. 시행)을 통해 리콜(제품수거 등)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 및 리콜 보완명령 근거 신설 등 제품안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업자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추가 리콜이행을 위한 보완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제품안전기본법

부적합 제품 수거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리콜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 주요내용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리콜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화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리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4526)

2020년 8월 12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가 쉽고 간편해집니다.
 - *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 기업 성장단계(시리즈 A·B·C 등) 별 맞춤형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조합의 후속투자가 완전히 허용됩니다.
 -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동일기업 지분을 30% 이상 확보 불가
 - (개선)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창업기획자는 기관출자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 가능
 - (개선)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출자자 참여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투자 제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등 자율성 강화
- 주요내용
 -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
 -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5)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제도를 개편합니다.

-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등
- 지정요건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서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대규모재난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편 제도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2년간(1회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 추진배경 산업 쇠퇴,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대규모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원
- 주요내용
 - (지정대상) 수도권 외 산업단지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지정요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 미흡 →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 이전, 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 (지원내용)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지원
 - (지정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 시행일 2020년 6월 25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이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집니다.

-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어 운영됩니다. 즉, 총 10,000개에 대한 손해가 계산되고, 여기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추진배경**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권 침해예방 목적
- **주요내용**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을 로열티로 계산함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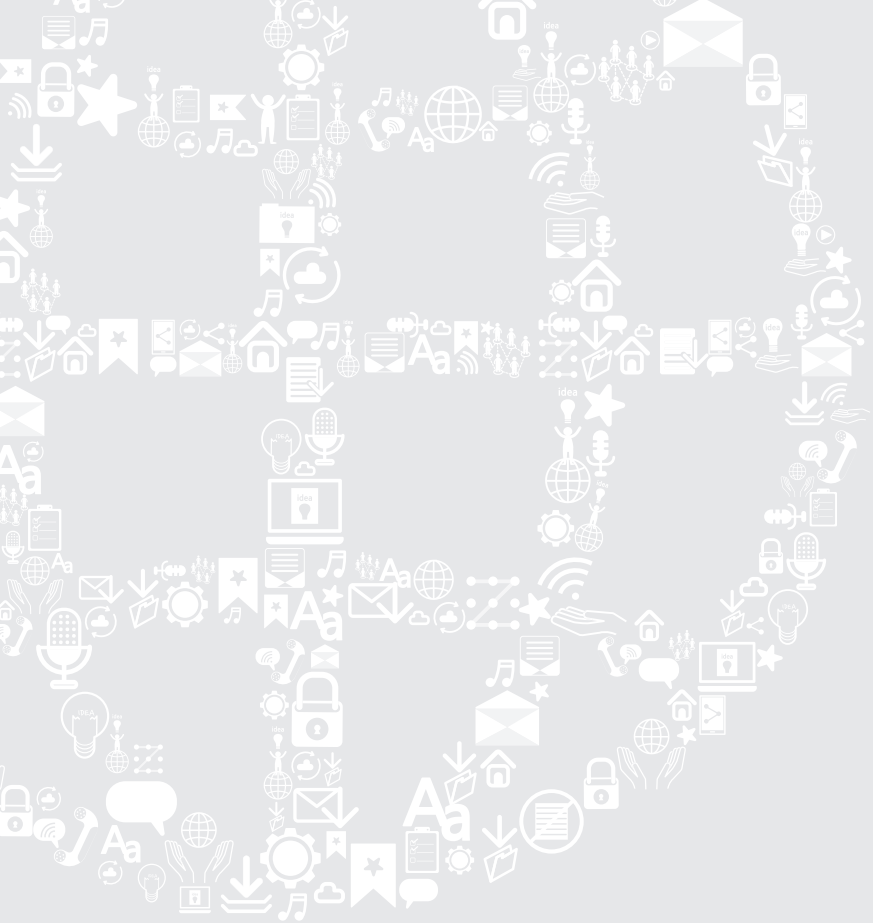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그간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건설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 인정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 **추진배경**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이나 분쟁 발생 가능 → 건설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보호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하도급법령 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 **시행일** 2020년 7월 8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보건·복지·고용



1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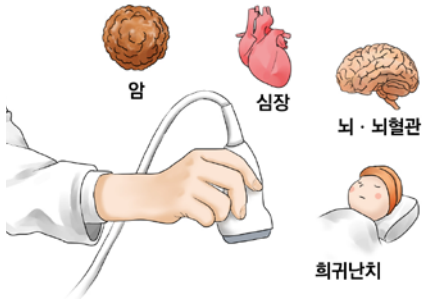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74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Before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눈, 흉부(유방)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86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20.8.28.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신설됩니다.



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80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9개 직종별로 규정하였습니다.



• 9개 직종 - 보험설계사, 레미콘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픽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After

'20.7.1.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 하반기에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19.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기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기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20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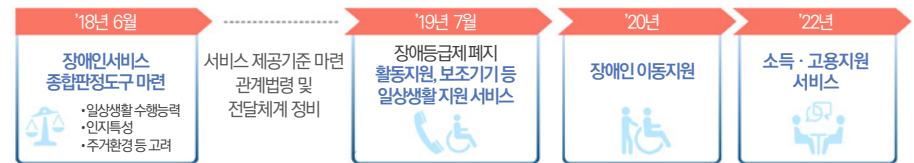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추진

- **추진배경**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주요내용**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서비스에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0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기준중위소득 100%이하→120%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3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 **주요내용**
 - 기본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지자체 제외 지원 대상은 120%→140%)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출산일 기준)
 -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 043-719-7107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 감염병을 관리합니다.

- 따라서, E형간염은 환자발생 시 24시간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 E형간염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또는 육가공 식품(소시지 등) 섭취를 통해 감염
 - 임신부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
-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입니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 **추진배경**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 **주요내용**
 - (신고) 24시간 이내
 -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신고대상) 환자, 병원체 보유자
 - ※ E형간염 특징
 - 분변·경구 경로 전파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61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합니다.
 - 현행(2019-2020절기): 3가 백신 지원, 1,381만명
 - 개정(2020-2021절기): 4가 백신 지원, 1,445만명
-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현행(2019-2020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2020-2021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
-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 현행: 3가 백신,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4가 백신,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 **시행일**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부터(2020년 10월 이후 예정)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 043-719-7287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시 통보대상이 되는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결핵 전파차단 및 예방관리가 강화됩니다.

(「결핵예방법」 및 시행령 '20.6.4 시행)

- 2020년 6월 4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결핵 발생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더 강화한다! 보도자료(20년 5월 19 배포)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 **추진배경**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발생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환경 개선이나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관리 하도록 제도화
- **주요내용**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결핵의 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규정
 - 학교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 군부대 :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사업장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시행일** 2020년 6월 4일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05, 7712)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1.7.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종사자 적용 방식 ☞ ① 당연 적용(적용 제외 허용), ② 보험료 공동 부담(1/2), ③ 기준 보수액(고시)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를 적용) 및 급여 산정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산재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19.12.30)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추진배경**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 **주요내용**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1.7.)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④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앞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재·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추진배경**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을 당연적용 대상에 추가
 -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도입(고안·직능 제외)
 -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 적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아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16.9.2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77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개정법의 부칙은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에 따라
-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퇴근 재해 발생 → 산재신청 → 재해조사 실시 →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판단(결정) → 보험급여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국회 본회의 통과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 **추진배경**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
- **주요내용**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2020년 6월 9일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제정

- **추진배경**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54조~제56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제175조)
- 그 외 필요한 규정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1,103억원 → 2,103억원, +1,000억원)
 - * '20.7.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차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참고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공지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 추진배경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융자종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 (소득요건)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259만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181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9.~'20.12.31. 월평균 388만원으로 확대
 - (임금체불생계비) 5,70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7.1.~'20.12.31. 최대 3,000만원 한도
- | ①혼례비 | ②의료비 | ④부모요양비 | ⑤자녀 학자금 | ⑥소액 생계비 | ⑦임금감소 생계비 | ⑧임금체불 생계비 |
|---------|---------|-----------------------------|--------------------------|---------|---------------------|---------------------|
| 1,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 500만원 | 2,000만원
(감소임금 내) |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연 0.7~1%)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고위험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0년 6월 2일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2020년 8월 28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됩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9.8.27.제정).

- 암, 희귀·난치질환 등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심사 제도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 신속처리제도〉

- ▲ (맞춤형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 ▲ (우선 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
- ▲ (조건부 허가) 암 등 중대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할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 자료(2상)로 허가

-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의 채취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체제 등)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추진배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 **주요내용**
 - 초기 임상시험에서 암 등 중대질환, 희귀·난치질환, 신종감염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품화 지원
 -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 등의 채취·처리·공급하는 경우 인체 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원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여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관찰
 - * 출기세포치료제, 동물의 조직·세포 이용 제제 등 투여 후 일정기간 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7)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올해 9월 신규로 설치하고, 지원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울 3곳, 전남 1곳의 센터 설치를 통하여 1,000개소 이상의 급식시설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준 합리적 조정 등 센터 운영 효율화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 또한, 급식시설이 쉽게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 간소화, 모바일 등록 기능을 마련하는 등 급식시설의 센터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

- **추진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약 52,000개소)
- **주요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24개소(9월경 4개소 추가 설치)
- **주요사업**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 어린이 건강상태,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어린이·조리원·교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043-719-2804

'20. 7월중 중독재활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영남권에 거주하는 약물사용자에 대한 개별회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그 동안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당산)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물사용자만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에 추가 설치로 영남권 거주 약물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약물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 약물사용자 발굴, 평가, 집중상담, 교육, 직업재활, 치료기관 및 입소시설 연계 등의 지원 서비스

■ 아울러 약물사용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운영방안(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양성과정 표준안) 및 개별회복지원서비스 표준안 개발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제40조의2, '20.12.4.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마약류 사범은 법정의무교육(200시간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중독재활센터는 재범률 감소 및 약물사용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 약물사용자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 **추진대상** 마약류사범의 재범률 및 재범역률이 가장 높아 체계적 재활교육, 상담 등 개별회복지원서비스 제공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은 수도권에 한정적 운영
- **주요내용**
 - (지역인프라 구축)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 약물사용자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 통합 체계 확산
 - (전문프로그램 개발)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법정의무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 기반 전문교육 및 상담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 (약물사용문제 전문인력 양성) 전국적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표준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 후 권역별 강사 및 상담사 배출
 - (표준화된 개별회복지원서비스의 표준화) 학술연구개발을 통해 근거 기반의 중독재활센터 실천모델 제시 및 지역본부 상담기능 확산
- **시행일** 2020년 7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90)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 032-740-2194)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가 하반기('20.8) 정식오픈 됩니다.

- ▣ 드론의 등록(장치신고·사업등록)부터 운영(비행승인·항공사진촬영허가), 말소까지 드론 정보 조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됩니다.
- ▣ PC·모바일을 통한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하나의 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 시범운영('20.4.~)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 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드론운용자가 비행승인, 사업등록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발생
- **주요내용**
 - (개념)
 -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부문)
 - 온라인 및 모바일 민원처리 서비스 개발
 - 드론 정보관련 업무처리 지원 서비스 개발
 - 민원 신청에 대한 자동 맵핑 기능 제공
 -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개발 및 통계 기능
 -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 구성 및 개발
 - (하드웨어 구축부문)
 - 서버 시스템, 보안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시행일** 2020년 8월 中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77)

12월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 위의 내용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신규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추후 배포 예정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 **추진배경**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 (등기권자) 임대사업자
 - (등기 시한)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
 - (제재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 혜택(신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시행기간 : '20.3.1.~'20.6.30.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 혜택 (신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교육세·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시행기간 : '20.7.1~'20.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7.1.)</p>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p>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권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실태조사 실시가능 조사 주기 : 매년 1회 서면 실태조사 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위반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조사결과 공표 -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266조) 및 관세법시행령(264조의2) 	<p>관세법 ('20.7.1.)</p> <p>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p>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우선매수권 부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법인을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경우 -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경우 - 물납자가 물납하기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하기일로부터 5년 이내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p>국유재산법 시행령 ('20.10.1.)</p> <p>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5)</p>

국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0년말까지) (대상)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② 사업의 종류가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코로나19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 극복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기재위의결 	<p>조세특례제한법 ('20.3.23.)</p> <p>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p>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함 (대상)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 - ② 사업의 종류가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코로나19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 극복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기재위의결 	<p>조세특례제한법 ('20.3.23.)</p> <p>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p>

국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단축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 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20.7.1.)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044-204-3412)

관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 (원칙)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침 • (예외) 물품가격이 200만원 (FOB기준)이하인 경우 수출 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신고가능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플랫폼 전용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 신설 •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 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 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 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한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관세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빅데이터 활용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학술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 익명정보 :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데이터 결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 -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 허용 ■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삭제 의무화 -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신용정보법 ('20.8.5.)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3천만원, 벌금 2천만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5천만원, 벌금 3천만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 (v) 유지 - 대표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본인확인인의 법적 근거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4.29일 배포)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 법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2항*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19.10.31.)</p>	<p>양성평등기본법 ('19.12.19.)</p>
			<p>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p>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부재 및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수료 후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자격증 발급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기준일,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도 안됨 (제21조제2항 신설)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64조의1제1호 신설)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5항 신설)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2020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보도자료('20. 5.11.)</p>	<p>청소년활동진흥법 ('20.11.20.)</p>
			<p>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p> <p>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다음 사업 시행	■ 다누리 배움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제공) 무료 ●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선발된 다다음 강사가 '상호문화 이해 활동' 등 찾아가는 다다음 프로그램 운영·제공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0.9월)</p>
			<p>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4)</p>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 성매매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 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및 지원 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 강화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 확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 * 성매매 및 성착취물 범죄 등 포함 	<p>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 추가 ● 13세 미만 간음·추행(형법 제305조)의 죄 추가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20. 4.30.)</p>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소음보상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소음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 소음피해배상금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소음피해에 대해 피해주민이 청구를 통해 소음피해보상금 수령 • 보상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1.1~12.31) 기간 중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3종으로 구분하고 1인당 월지급액을 지급 <p>☞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19.11.19./ 설명자료(19.11.20.)</p>	<p>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20.11.27.)</p>
			<p>국방부 군소음보상TF (02-748-5894)</p>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보상금 • 일반장애 장애보상등급에 따라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7.8배 - 2급: " 5.2배 - 3급: " 3.9배 - 4급: " 2.6배 ■ 사망보상금 • 전사와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일반순직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일반순직: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순직유족연금 •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미만: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보상금 • 일반장애 장애보상등급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 2급: " 6배 - 3급: " 4.5배 - 4급: " 3배 • 전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하고, 특수직무공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병사만 해당, 전상·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은 간부 및 병사 해당 ■ 사망보상금 • 전사와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 모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순직유족연금 •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유족 가산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률: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최저)~1.8배(최고) - 유족가산: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10.부 시행 중 <p>☞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보도자료</p>	<p>군인 재해보상법 ('20.6.11.)</p>
			<p>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p>

국방부

국가보훈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 (수급요건)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 (분할비율)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설정 가능 • (수급기간) 연금 수급권자가 이혼 또는 퇴직 즉시 개시하며,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시까지 수령 • (승계) 유족에게 승계 불가(분할연금 수급자가 군인 퇴직자 보다 먼저 사망 시 군인 퇴직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을 수령) • (기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 시에도 균등분할하고,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선 청구 가능 • (적용대상)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을 한 사람부터 지급 	군인연금법 ('2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보도자료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 후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복무 중인 경우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 ■ 전역·퇴직 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퇴직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국가유공자법 ('2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역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호위탁병원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보호병원 진료시 진료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보호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 50% 감면 • 보호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본인부담진료비" 및 "약제비용" 의 50% 감면 • 위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 -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6호에 따른 지원제외자" 및 "약제비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9.2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6월 30일부터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려는 현역 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심사 위원회에 편입신청 시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복무 	<p>대체역법 시행령 (‘20.6.30.)</p>
		<p>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p>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통임무 신설 (일상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 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긴급업무) 방역, 산물진화, 수해 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업무 	<p>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20.6.12.)</p>
		<p>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p>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복무 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p>병역법 (‘20.10.1.)</p>
		<p>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p>	
		<p>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p>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해 '입영월' 본인선택 본인선택 접수기간 : 3~11월 입영일자(부대)를 12월에 확정, 의무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해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 ('입영월' 선택 폐지) 본인선택 접수기간 : 7~12월 입영일자 확정시기를 최대 5개월 단축 (12월→7월) 입영부대는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으로 분류 	<p>제도 개선</p>
		<p>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p>	
입영 전 병역의무자 대상 병역진로상담·군생활 정보제공·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개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를 지원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제도를 2019년에 처음 도입, 우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찾아가는'서비스를 제공 '20.7월부터 1:1맞춤 상담, 군 생활 정보와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을 개인·단체, 학교 특성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 	<p>제도 개선</p>
		<p>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2)</p>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의식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기관의 장은 월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기관 장의 월 1회 교육시 개인정보 보호교육 포함하도록 의무화 교육 미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제재기준 강화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다만,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제한적 허용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신설 복무 중 지켜야 할 구체적인 정보보안 수칙 안내 복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p>제도개선 (‘20.6.12.)</p>
		<p>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p>	

방위사업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휴시설 유지관련 용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시설 유지 관련 용자 지원 (용자대상) 방산업체 (용자지원) 가동률* 40% 이하인 업체 *유휴시설의 가동률은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준의 유휴시설 매출액을 유휴시설의 적정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시설 유지 관련 용자 지원 (용자대상) 방산업체 (용자지원) 가동률* 40% 이하인 업체 *유휴시설의 가동률은 자금 소요 직전 유휴시설 매출액을 그 바로 전 유휴시설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위 항의 매출액 기준은 분기, 반기 또는 연도 중 하나로 한다. (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 업체 조기 지원 가능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개정 ('20.5.21.)
			<p>☞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 시설 용자지원 나사다'(5.25.(월))</p> <p>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6)</p>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사업청에서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수행 * 일반물자 군수품 : 급식, 피복, 항공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o.kr)에서 조달업무 수행 조달업무 이관 이후에도 기존방위사업청의 계약관련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 예정 '20.6.30.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된 계약은 종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관리 수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20.7.1.)
			<p>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6)</p> <p>조달청 자재장비과 (042-724-7288)</p>

방위사업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 추가 (원칙)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한 이후 청의 행정소요 기간에 대한 지체면제 허용 (예외) 계약문서에 행정소요 기간을 특정 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군수품조달 관리규정 ('20.3.2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6)
청 계약특수조건 표준(5종)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정산금액의 증감·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2항에 따라 정산하고 그 정산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2항, 「방산원 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계약특수조건 표준(5종) 정산」 규정 ('20.4.21.)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02-2079-6922)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인이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7.1.)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인인증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규제 중심 ■ 정부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법 2조~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전환 ■ 공인인증제도 폐지 	전자서명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획과 (044-202-6446)	
전자서명 법적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전자서명에 사실 전자서명 보다 우월한 법적 효력 부여 (법 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일한 법적효력 부여(안 제3조) 	전자서명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획과 (044-202-6446)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활성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서명수단 의무화 방지 ※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사용 등 제한 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 상위법령에 명시(안 제6조) 	전자서명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획과 (044-202-64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인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인정 신설(안 제8조~제11조)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인정 제도 -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운영기준 고시) - 운영기준 준수여부 확인 희망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에 대해 평가·인정 및 증명서 발급(임의인증) 등 	전자서명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획과 (044-202-6446)		
전자서명 가입자 보호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가입자·이용자 보호 (법 제6조, 제26조) ※ 보호조치 사항 - 공인인증업무준칙(일종의 약관) 작성, 과기정통부 신고 및 준수 - 사업자는 전자서명 관련 가입자·이용기관에게 손해 발생시, 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손해 배상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 가입자·이용자 보호 강화 (안 제15조, 제20조, 제22조) ※ 보호조치 사항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일종의 약관) 작성, 홈페이지 게시 및 준수 - 사업자는 전자서명 관련 가입자·이용기관에게 손해 발생시, 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손해 배상 - 전자서명 분쟁조정 규정 신설로 재판 없이도 신속·간편히 분쟁 해결 	전자서명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획과 (044-202-64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모호 • (원칙) "원칙적 전자문서 인정" (제4조제1항), "별표에 규정된 문서행위 효력 인정"(제4조 제3항)의 규정 형식으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모호 * (주요민원) 일반적인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이용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명확 • (원칙)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서면과 동일하다고 간주되어 법적 효력 명확 * 열람가능성, 재현성, 보존가능성 • (예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민법상 보증계약은 전자적 방식으로 불가(민법제428조의2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문서 폐기 근거 모호 • 법적근거없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종이문서 폐기를 규정하여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이중보관하여 업무효율성 저해 및 비용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 (원칙)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어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 • (예외) 종이문서의 노후화 등으로 가독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예. 전자고지 사업자) 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인력, 설비, 기술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진입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설비 및 기술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044-202-6141)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임대차 목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 분쟁조정절차의 개시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조정절차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의 단축 •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단축 ■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 • 조정신청이 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p>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1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전자보석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보석제도' 신규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에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규정 신설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p>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8.5.)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43)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3조의2제2항(벌칙) • 7년 5천만원 ■ 법 제93조의3(벌칙) • 5년 3천만원 ■ 법 제94조(벌칙) • 3년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3조의2제2항(벌칙) • 7년 7천만원 ■ 법 제93조의3(벌칙) • 5년 5천만원 ■ 법 제94조(벌칙) • 3년 3천만원 	출입국관리법 ('20.9.25.)
양벌규정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9조의3(양벌규정) • <신 설> •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9조의3(양벌규정) •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삭 제>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00조 제5항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00조 제5항 • 과태료 면제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7.1.부터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7. 1. 이전 자진출국 신고자 • 범칙금 처분 면제 • 입국금지 면제 •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국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7. 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 범칙금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중단 	<p>출입국관리법 (‘20.7.1.)</p> <hr/> <p>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10. 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 범칙금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중단 <p>☞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초기 팝업창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시행</p>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석방자 중 특정사범에 한정하여 전자감독 실시 •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중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악취유인, 강도사범에 한하여 전자감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석방 시 전자감독 대상 확대 • 죄명에 관계없이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치부착법」제22조제2항 신설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검색창에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회</p>	<p>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8.5.)</p> <hr/> <p>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을 수행 ■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가능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처벌 가능 ■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 가능 ■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 등 가능 ■ 피해아동이 성인에 도달하는 때까지 피해아동보호명령 가능 ■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각 임시조치, 보호처분 집행담당자가 학대행위자의 이행상황을 통보하게 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가능하게 함 <p>☞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법무뉴스> 보도자료>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p>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 모두 수행 ■ 현장조사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음 ■ 학대현장에서만 응급조치가 가능하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를 확인하고도 행위자에게 돌려보내야 했음 ■ 피해아동 본인만 응급조치 등 보호 가능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4년을 넘길 수 없으며, 4년이 경과하면 학대행위자의 교화여부를 불문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돌아감 ■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 돌려보내는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을 수행 ■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가능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처벌 가능 ■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 가능 ■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 등 가능 ■ 피해아동이 성인에 도달하는 때까지 피해아동보호명령 가능 ■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각 임시조치, 보호처분 집행담당자가 학대행위자의 이행상황을 통보하게 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가능하게 함 <p>☞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법무뉴스> 보도자료>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p>	<p>아동학대처벌법 (‘20.10.1.)</p> <hr/> <p>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p>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제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유죄판결 시 이수명령 의무적 병과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이수명령 병과 •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 이수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2.4.)</p> <hr/> <p>법무부 심리치료과 (02-2110-38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확인서를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부받은 비자발급확인서를 분실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출력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이 쉽게 확인되므로 위변조 등의 검증용이 ② 예산절감 및 사증발급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p>출입국관리법 (‘20.7.1.)</p> <hr/> <p>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p>
비자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비자발급 시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간 260여만장의 비자스티커 인쇄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비자스티커 관리, 부착 업무에 전담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확인서를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부받은 비자발급확인서를 분실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출력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이 쉽게 확인되므로 위변조 등의 검증용이 ② 예산절감 및 사증발급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p>출입국관리법 (‘20.7.1.)</p> <hr/> <p>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p>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0.11.27.)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의 응급 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 • (응급조치외무)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조치외무)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어린이안전법 ('20.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20.5.19.)</p>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생년월일과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19.12.18.)</p>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0월)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산업적 활용 가능 • (개념) 추가정보의 이용없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활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 제공 가능 ■ 가명정보 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문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허용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p>	개인정보 보호법 ('20.8.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6)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를 통해 수집한 목적 내로만 이용 가능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에 따른 데이터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 기획총괄과 (02-2100-2423)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오프라인 및 기타), 방통위(온라인), 금융위(개인신용정보)로 감독기능이 분산되어 유사·중복 규제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 일원화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p>	개인정보보호위 (044-205-2846)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관 관리 하에전문가 의견 중심의중간-연차 평가 시행 후 연구 진행 • 국민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기획 단계까지 참여하고, 추후 연구개발 과정은 전문가 및 정부 중심으로 진행 • 중간-연차 평가시 전문가 의견 및 본부 과제담당관 검토 의견 바탕으로 차년도 연구 내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국민이 연차별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 의견 수렴 진행 • 국민의 역할을 사업 제안-기획에서 평가 단계까지 확장함에 따라 국민 안전역량 및 안전 체감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평가 의견은 연구 수행기관·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년도 연구 내용 반영 여부 결정 - 반영된 의견은 매년 진행되는 체험부스에 패널로 제작하여 국민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 	('20.9.23.~9.2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입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가입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가입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3조(가입범위)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의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p>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 사용시설에 의뢰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제외 ●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제3호)「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시설 - (제4호)「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제5호)「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제6호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시설 - (제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 사용시설에 의뢰기관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포함 ●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제7호 및 제8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뢰기관 - (제8호)「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병원에서도 치료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p>	온천법 시행령 (‘20.6.23.)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3)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 ● (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p>■ 시행일 : 2020년 9월</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9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성매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추가 ■ 아동·청소년 공간·강제추행 등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 신설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20.5.20.)</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6.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조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 이상 SW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정성평가 필수제안 사항 평가 가능 ■ 정성평가항목을 포함한 기술평가 항목의 평가등급간 10% 배점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에서 필수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정량 및 정성필수 제안사항을 구분하여 평가 가능 ■ 정성필수제안 사항의 평가등급간 배점의 20% 배점차를 두어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그밖에 기술평가 항목 10% 배점 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0.4.23. 시행, 정성필수제안 ‘20.8.1. 시행)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6)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 방법 개선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th> <th>배점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장비 투입 비율</td> <td>A. 100%이상 10</td> </tr> <tr> <td></td> <td>B. 75%이상-100%미만 7.5</td> </tr> <tr> <td></td> <td>C. 50%이상-75%미만 5</td> </tr> <tr> <td></td> <td>D. 50%미만 0</td> </tr> </tbody> </table> <p>※ 입찰공고에 명시한 차령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투입 차량의 총 대수 중 '차령'을 충족하는 차량 대수의 비율로 평가</p>	심사항목	배점 한도	장비 투입 비율	A. 100%이상 10		B. 75%이상-100%미만 7.5		C. 50%이상-75%미만 5		D. 50%미만 0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th> <th>배점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안전성 정도</td> <td>A. 1등급</td> <td>10</td> </tr> <tr> <td>B. 2등급</td> <td>7.5</td> </tr> <tr> <td>C. 3등급</td> <td>5</td> </tr> <tr> <td>D. 4등급</td> <td>5</td> </tr> <tr> <td>E. 5등급 및 공시불응</td> <td>0</td> </tr> </tbody> </table> <p>※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에 따라 평가</p>	심사항목	배점 한도	안전성 정도	A. 1등급	10	B. 2등급	7.5	C. 3등급	5	D. 4등급	5	E. 5등급 및 공시불응	0	(‘20.9.1.)
		심사항목	배점 한도																							
장비 투입 비율	A. 100%이상 10																									
	B. 75%이상-100%미만 7.5																									
	C. 50%이상-75%미만 5																									
	D. 50%미만 0																									
심사항목	배점 한도																									
안전성 정도	A. 1등급	10																								
	B. 2등급	7.5																								
	C. 3등급	5																								
	D. 4등급	5																								
	E. 5등급 및 공시불응	0																								
여객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 방법 개선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0-10호)"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조달청

경찰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명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명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 	<p>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라.신인도 5)고용 우수기업 (*20.7.1.)</p>																																																																								
			<p>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93)</p>																																																																								
사전심사 세부기준 변경	<p>■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세부심사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납품실적</td> <td rowspan="2">20</td> <td>납품실적수준</td> <td>20</td> </tr> <tr> <td>기술수준</td> <td>13</td> </tr> <tr> <td rowspan="2">2.기술능력</td> <td rowspan="2">17</td> <td>생산역량수준</td> <td>4</td> </tr> <tr> <td>경영상태수준</td> <td>20</td> </tr> <tr> <td rowspan="3">3.경영상태</td> <td rowspan="3">20</td> <td>가격만족수준</td> <td>10</td> </tr> <tr> <td>품질만족수준</td> <td>10</td> </tr> <tr> <td>서비스만족수준</td> <td>10</td> </tr> <tr> <td rowspan="3">4.만족도</td> <td rowspan="3">40</td> <td>사후관리 신뢰수준</td> <td>3</td> </tr> <tr> <td>계약이행 신뢰수준*</td> <td>-55</td> </tr> <tr> <td>계</td> <td>100</td> <td>계</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1.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기술수준	13	2.기술능력	17	생산역량수준	4	경영상태수준	20	3.경영상태	20	가격만족수준	10	품질만족수준	10	서비스만족수준	10	4.만족도	40	사후관리 신뢰수준	3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계	100	계	100	<p>■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세부심사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납품실적</td> <td rowspan="2">20</td> <td>납품실적수준</td> <td>20</td> </tr> <tr> <td>기술수준</td> <td>19</td> </tr> <tr> <td rowspan="2">2.기술능력</td> <td rowspan="2">25</td> <td>생산역량수준</td> <td>6</td> </tr> <tr> <td>경영상태수준</td> <td>20</td> </tr> <tr> <td rowspan="2">3.경영상태</td> <td rowspan="2">20</td> <td>품질검사 결과</td> <td>25</td> </tr> <tr> <td>사후관리</td> <td>10</td> </tr> <tr> <td rowspan="2">4.만족도</td> <td rowspan="2">25</td> <td>사후관리 신뢰수준</td> <td>10</td> </tr> <tr> <td>계약이행 신뢰수준*</td> <td>-55</td> </tr> <tr> <td rowspan="2">5.신인도</td> <td rowspan="2">10</td> <td>사후관리 신뢰수준</td> <td>10</td> </tr> <tr> <td>계약이행 신뢰수준*</td> <td>-55</td> </tr> <tr> <td>계</td> <td>100</td> <td>계</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1.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기술수준	19	2.기술능력	25	생산역량수준	6	경영상태수준	20	3.경영상태	20	품질검사 결과	25	사후관리	10	4.만족도	25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5.신인도	10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계	100	계	100	<p>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 (*20.7.1.)</p>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1.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기술수준	13																																																																								
2.기술능력	17	생산역량수준	4																																																																								
		경영상태수준	20																																																																								
3.경영상태	20	가격만족수준	10																																																																								
		품질만족수준	10																																																																								
		서비스만족수준	10																																																																								
4.만족도	40	사후관리 신뢰수준	3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계	100	계	100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1.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기술수준	19																																																																								
2.기술능력	25	생산역량수준	6																																																																								
		경영상태수준	20																																																																								
3.경영상태	20	품질검사 결과	25																																																																								
		사후관리	10																																																																								
4.만족도	25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5.신인도	10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계	100	계	100																																																																								
			<p>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9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12개의 시설을 추가해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확대 	<p>도로교통법 (*20.11.27.)</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p>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기록 작성·보관· 제출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p>도로교통법 (*20.11.27.)</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p>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p>도로교통법 (*20.11.27.)</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p>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 	<p>도로교통법 (*20.11.27.)</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p>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 버스에 부착할 수 있음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p>도로교통법 (*20.11.27.)</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p>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거도로 통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장치치 자전거로 분류 차도로만 통행 가능 운전 시 운전면허 필요 원동장치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신설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 	<p>도로교통법 (*20.12.10.)</p>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p>

경찰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고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위반 시 위반한 속도를 구간별로 나누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m/h이상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시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 벌금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 벌금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20.12.10.)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2)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 ■ 소방차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소방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 	도로교통법 (*20.12.10.)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대상이 1~4급 장애인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도로교통법 (*20.7.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650)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법적 근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신설 • (원칙) 다른 공종과 분리 도급 • (예외)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은 별도로 정할 예정임 • (벌칙)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20.9.1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67개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4	가족연염병 예방법	현행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6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현행
	8	건강검진기본법	현행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행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1	건설기계관리법	현행
	12	건설기술 진흥법	현행
	13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현행
	16	건축법	현행
	17	건축사법	현행
	18	검역법	현행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20	경륜·경정법	현행
	21	경비업법	현행
	22	계량에 관한 법률	현행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행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행
	25	고용보험법	현행
	26	골재채취법	현행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8	공연법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현행
	30	공인중개사법	현행
	31	공중위생관리법	현행
	32	관광진흥법	현행
	33	광산안전법	현행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현행
	35	교통안전법	현행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
	37	국가기술자격법	현행
	38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39	국민건강증진법	현행
	40	국민영양관리법	현행
	41	국민체육진흥법	현행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현행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45	계도운송법	현행
	46	근로복지기본법	현행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8	금융주주회사법	현행
	49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행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5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현행
	52	내수면어업법	현행
	53	노인복지법	현행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행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현행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현행
	58	농약관리법	현행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현행
	60	농어촌정비법	현행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현행
	62	농지법	현행
	63	실내공기질관리법	현행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66	대기환경보전법	현행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69	대외무역법	현행
	70	맹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71	도로교통법	현행
	72	도로법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73	도선법	현행
	74	도시가스사업법	현행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76	도시철도법	현행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현행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79	동물보호법	현행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81	말산업 육성법	현행
	82	먹는물관리법	현행
	83	모자보건법	현행
	84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
	86	문화재보호법	현행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
	88	물류정책기본법	현행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현행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현행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
	94	보험업법	현행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현행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
	98	비료관리법	현행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01	사료관리법	현행
	102	사방사업법	현행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현행
	104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현행
	107	산림보호법	현행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현행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현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114	산업표준화법	현행
	115	산지관리법	현행
	116	상표법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117	상호저축은행법	현행
	118	새마을금고법	현행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현행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현행
	122	석면안전관리법	현행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
	124	선박안전법	현행
	125	소금산업 진흥법	현행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현행
	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현행
	129	소비자기본법	현행
	1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현행
	131	소하천정비법	현행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현행
	13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현행
	134	수도법	현행
	1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현행
	136	수산업법	현행
	137	수산자원관리법	현행
	138	수상레저안전법	현행
	139	물환경보전법	현행
	140	습지보전법	현행
	141	승강기 안전관리법	현행
	1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143	식물방역법	현행
	144	식물신품종 보호법	현행
	145	식품산업진흥법	현행
	146	식품안전기본법	현행
	147	식품위생법	현행
	1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
1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150	아동복지법	현행	
15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152	아이돌불 지원법	현행	
153	악취방지법	현행	
1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현행	
1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56	약사법	현행	
157	양곡관리법	현행	
1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현행	
15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현행	
160	여성법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161	어장관리법	현행
	162	어촌·어항법	현행
	1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행
	1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165	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
	1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
	16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68	영유아보육법	현행
	1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17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172	외국환거래법	현행
	173	외식산업 진흥법	현행
	17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현행
	175	원자력안전법	현행
	176	위험물안전관리법	현행
	17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1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현행
	179	유아교육법	현행
	18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81	은행법	현행
	182	음약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1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
	184	의료기기법	현행
1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86	의료법	현행	
18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현행	
188	인삼산업법	현행	
18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	
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192	입양특례법	현행	
193	자격기본법	현행	
194	자동차관리법	현행	
195	자연공원법	현행	
196	자연재해대책법	현행	
197	자연환경보전법	현행	
1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19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현행	
2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현행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	
202	장애인복지법	현행	
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	
204	재해구호법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20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206	전기공사사업법		
	207	전기사업법		
	2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20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0	전기통신사업법		
	211	전력기술관리법		
	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5	정보통신공사사업법		
	2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19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1	제품안전기본법		
	222	종자산업법		
	2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4	주택법		
	2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6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227	지역보건법		
	22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29	지하수법		
	230	직업안정법		
	23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집단에너지사업법		
	233	철도사업법		
	234	철도안전법		
	235	청소년 보호법		
	236	청소년활동 진흥법		
	2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2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39	초차법		
	2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1	축산물 위생관리법		
	242	축산법		
	2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44	토양환경보전법		
	245	폐기물관리법		
	24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2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250	하수도법		
	251	하천법		
	252	학교급식법		
	253	학교보건법		
	2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5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6	한국마사회법		
	2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58	항공안전법		
	259	항공보안법		
	260	항로표지법		
	261	항만법		
	262	항만운송사업법		
	263	해사안전법		
	26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6	해양환경관리법		
	267	해운법		
	268	혈액관리법		
	2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70	화장품법		
	271	화학물질관리법		
	2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3	환경보전법		
	2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5	환경영향평가법		
	27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81	방위사업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2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8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84	의료급여법		
	28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8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9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29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29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95	방송법	
	296	예금자보호법	
	297	전자금융거래법	
	2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99	결핵예방법	
	300	경찰관 직무집행법	
	3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0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05	담배사업법	
	3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3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11	소음·진동관리법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3	유통산업발전법	
	3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15	저작권법	
	31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3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1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320	건축물관리법	
	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25	국가보안법	
	3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29	국민연금법		
330	국유재산법		
3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3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3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33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336	군사기밀보호법	
	3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38	군형법	
	339	귀속재산처리법	
	3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3	기계설비법	
	344	기초연금법	
	34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46	노후준비 지원법	
	34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50	범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3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5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56	민방위기본법	
	357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3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60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1	병역법	
	36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6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364	보안관찰법	
	3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67	부정수표 단속법	
	3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370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37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37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75	석탄산업법		
37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7	선박직원법		
378	선박평형수 관리법		
379	선원법		
380	소방기본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381	소방장비관리법	추가
	38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추가
	3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38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추가
	38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38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추가
	387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추가
	388	신용협동조합법	추가
	389	아동수당법	추가
	390	에너지법	추가
	391	연안관리법	추가
	39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추가
	39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추가
	394	예비군법	추가
	39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추가
	396	우편법	추가
	397	위생용품 관리법	추가
	39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추가
	39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4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추가
	4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추가
	40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추가
	403	임금채권보장법	추가
	404	자원순환기본법	추가
	4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
	40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추가
	4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추가
	4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추가
	4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추가
	4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추가
	411	장애인연금법	추가
	4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414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41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
	416	재난적외로비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417	재일교포 복송처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추가
	4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추가
	4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추가
	420	전기통신기본법	추가
	421	전자서명법	추가
	4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추가
	423	전파법	추가
	424	주거급여법	추가
	425	주민투표법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	426	주차장법	추가	
	427	중소기업은행법	추가	
	42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추가	
	42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가	
	4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가	
	43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추가	
	43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가	
	4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추가	
	43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435	청소년 기본법	추가	
	436	청소년복지 지원법	추가	
	437	청원경찰법	추가	
	43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가	
	439	출입국관리법	추가	
	44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추가	
	442	통신비밀보호법	추가	
	44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추가	
	4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45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4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추가	
	447	한부모가족지원법	추가	
	448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추가	
	44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추가	
	450	해양경비법	추가	
	4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추가	
	45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5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추가	
	45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가	
	4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5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457	환자안전법	추가	
	4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459	지방세기본법	추가	
	460	지방재정법	추가	
	4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4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46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가	
	464	공공주택특별법	추가	
	465	공공시설법	추가	
	466	항공사업법	추가	
	467	공동주택관리법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요구 불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요구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보도자료>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p>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6.11.)</p>
			<p>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p>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제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신청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정보확인 동의만으로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 면제 • (원칙)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을 통해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확인 • (예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한다'(*20.3.19.)</p>	<p>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7.1.)</p>
			<p>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p>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 시 해지와 신규가입을 각각 처리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사업자에 해지 처리와 가입희망 사업자에 신규 서비스 가입절차를 각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입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의 해지가 자동 처리 • (시행일) 2020년 7월 • (참여사업자) KT, LGU+, SKB, SKT, KT-Skylife • (시행방식) 원스톱 전환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자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자 전환 신청시 이용자 접촉 없이 기존서비스를 해지 처리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도입) 서비스 제공범위와 사업자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는 '21.7월 도입 예정 - (제외서비스) 유료방송 단품은 케이블 TV사업자에 집중되어 일방적인 IPTV 사업자로의 가입자 전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단품 적용여부는 시행 후 검토 <p>☞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도 사업자 전환 쉬워진다</p>	<p>제도개선 (*20.7.1.)</p>
			<p>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 이외에 개별 숙박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을 제공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보도자료('20. 5.11.)</p>	<p>청소년활동진흥법 ('20.11.20.)</p>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보도자료('20. 5.11.)</p>	<p>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p>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기본체계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근거 마련 • 문화재교육의 정의 •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 문화재교육의 지원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인증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0.5.27.)</p>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2)</p>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운영되던 문화재청 국외반출 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 문화재청에 국외반출 허가 신청과 동시에 관세청 통관 절차를 별도 이행하는 이원화된 행정의 번거로운 존재 • 신청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화재 반출 기간과 실제 반출 기간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반출 문화재 통계의 오류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국외반출 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 구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등 제반 절차의 간소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반출 허가된 문화재의 통관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인 관리 도모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11.27.)</p>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20)</p>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신설)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성적증명서 	<p>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영업의 승계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영업의 승계규정 • 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변경신고 기한 명시 • 변경신고 의무만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변경신고 기한 명시 • 상호·영업장소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토록 기한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영업의 승계신고 및 실태신고 의무 위반 시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p>	<p>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p>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농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 간소화	<p>개정 전</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p> <p>↓</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접수 (관할 시·군·구)</p> <p>↓</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전달 (관할 시·군·구 → 공농유적본부)</p> <p>↓</p> <p>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공농유적본부)</p> <p>↓</p> <p>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요청 (공농유적본부 → 문화재청 소관부서)</p> <p>↓</p> <p>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문화재청 소관부서 → 관할 시·군·구)</p> <p>↓</p> <p>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관할 시·군·구 → 사업시행자)</p> <p>↓</p> <p>사업시행 및 착수, 완료신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관할 시·군·구)</p>	<p>개정 후</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p> <p>↓</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접수 (관할 시·군·구)</p> <p>↓</p> <p>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전달 (관할 시·군·구 → 공농유적본부)</p> <p>↓</p> <p>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공농유적본부)</p> <p>↓</p> <p>생략</p> <p>↓</p> <p>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공농유적본부 → 관할 시·군·구)</p> <p>↓</p> <p>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관할 시·군·구 → 사업시행자)</p> <p>↓</p> <p>사업시행 및 착수, 완료신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관할 시·군·구)</p>	<p>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20.5.27.)</p> <p>문화재청 공농유적본부 (02-6450-3849)</p>							
	<p>■ 수리기술자 1명 이상 의무 보유 (등록요건)</p> <table border="1"> <tr> <th>기술자</th> <th>기능자</th> </tr> <tr> <td>수리기술자 1명 이상</td> <td>한식 목공 등 2명 이상</td> </tr> </table> <p>• (운영기준)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배치 의무</p> <p>종합수리업자(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p> <p>전문수리업자(수리기술자 배치)</p>	기술자	기능자	수리기술자 1명 이상	한식 목공 등 2명 이상	<p>■ 수리기술자 1명 이상 보유요건 완화 (등록요건)</p> <table border="1"> <tr> <th>기술자</th> <th>기능자</th> </tr> <tr> <td>-</td> <td>한식 목공 등 2명 이상</td> </tr> </table> <p>• (운영기준) 하도급을 받은 경우 현장에 수리기술자 미배치</p> <p>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 하도급</p> <p>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p>	기술자	기능자	-	한식 목공 등 2명 이상
기술자	기능자									
수리기술자 1명 이상	한식 목공 등 2명 이상									
기술자	기능자									
-	한식 목공 등 2명 이상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신설)	<p>■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계획 수립</p> <p>• (수급계획) 매년마다 재료 사용 현황과 소요량 전망 등에 대한 계획 수립</p> <p>• (실태조사)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료별 생산 및 사용 현황 등 조사 - 정기(연 1회), 수시(필요시)</p> <p>• (재료비축) 수급이 곤란한 재료를 별도 비축</p>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4.)</p> <p>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6)</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신설)	<p>■ 등록정보 유효기간 도입: 3년</p> <p>- 등록 후 3년간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 말소</p>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20.8.12.)</p> <p>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044-201-1410)</p>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신설)	<p>■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p>	<p>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8.21.)</p> <p>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2)</p>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신설)	<p>■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30㎡ (연면적 기준)를 초과하더라도 양수양도* 가능하도록 허용 * 사업자 변경시 신규 신고 가능 	<p>농어촌정비법 (*20.8.12.)</p>
	<p>■ 신고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거주기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거주 • (주택소유) 소유, 임차주택 	<p>■ 신고요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 -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 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에서 신고 허용 * 단,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신설)	<p>■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안전관리 강화</p>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p>
	<p>■ 신고필증 게시</p>	<p>■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 의무화</p>	<p>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90)</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8.12.)으로 동물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추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보조조건, 인명구조조건,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탐지견을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실험 금지 대상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기준 삭제 *「동물보호법」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장묘 시설 확장로 개수 제한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장묘 시설 확장로 개수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장묘업자가 동물등록 대상 동물을 처리할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판매업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신고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도 안내토록 보완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을 70세로 변경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최신법령정보</p>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3)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정비 사전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정비대상 빈집 -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공익신고 → 행정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공익신고)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가능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지하기에 부적절한 빈집 - (현장조사) 지자체는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조사 - (행정지도) 조사결과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비명령 등) 농어촌 생활 환경에 지속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정비명령 및 직권 철거 가능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보도자료)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보도자료</p>	농어촌정비법 ('20.8.1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 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지원시 등록정보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장이 융자·보조금 등 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후 사업계획서와 등록정보가 불일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0년 법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p>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20.8.12.)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044-201-14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물 :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물 :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로 관리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축산법 개정 보도자료</p>	<p>축산법 ('20.8.28.)</p>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52)</p>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NRP) 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책임수의사 검사에 의한 원유 잔류물 질검사에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p>	<p>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20.7.1.)</p> <p>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3-719-2978)</p> <p>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p>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8.28)으로 친환경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 이상) 인증제 시행 유기원료 95% 이상: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 이상, 70% 이상) 인증제 확대 시행 유기원료 95% 이상: 인증제 유기원료 70% 이상: 인증제 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p>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20.8.28.)</p> <p>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인증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 자율표시 유통) 표시기준: 없음 인증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준 가공원료,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공방법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표시 제한 유기(무농약)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표시 강화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금지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최신법령정보</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진흥법 제정 시행('20.8.28.)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 도입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계획 일정 지정기준에 적합한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식진흥법 (제11조, 제15조)</p>	<p>한식진흥법 ('20.8.28.)</p> <p>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3)</p>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허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농업인(농업은퇴,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 :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농업인(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농지) * 임대인의 농업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가능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 확대(3년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농지는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최신법령정보</p>	<p>농지법 시행령 ('20.8.12.)</p> <p>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p>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최신법령정보</p>	<p>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20.7.1.)</p> <p>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p>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8월 28일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구명조끼 착용 기상특보 및 기상 예비특보 발효시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선안전조업법 ('20.8.28.)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5대 대형 항만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 (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행정예고)*황산화물배출 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9.8.28.)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9.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관리 관련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위생 철저 및 다른 이용자와의 접촉 자제 차양시설 이격 설치 체액 배출 및 음식물 섭취 최소화 공동이용시설 거리두기 실시 관리자(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대응반 구성운영 거리두기 홍보 공동이용시설 주기적 소독 실시 방문자 응대 시 주의사항 	해수욕장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20.5.27.)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20.5.2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에 대하여 대규모 자본진입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하여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 	양식산업발전법 ('20.8.2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항만구역내 위험구역 안전사고 예방 (방파제 출입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구역내의 위험구역에 대한 시설물 출입통제 근거 마련 항만구역내의 위험구역*에 대한 시설물 출입통제 근거 마련 * ①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②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③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항만법 ('20.7.30.)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 운영('16~'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경남권 초등학교 경남권역 초등학생 대상 찾아 가는 해양환경이동교실 운영 연간 약 300회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운영('20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수도권, 서해권, 경남권 초등학교 전국범위 교육수요 대응 추진 ('21년~) 연간 약 900회(대당 300회) 교육운영 추진 	환경교육진흥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2)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새로이 폐기물 해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20.12.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관리청에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이행의 의무 부여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해역관리청 등은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 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거·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20.12.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계법령 위반 어구의 제작·판매 또는 적재 금지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계법령 위반 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또는 적재 금지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자원관리법 ('2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보도자료)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0.3.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8)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금어기·금지체장 등 준수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금어기·금지체장 등 준수 의무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금어기·금지체장 등 준수 의무 부과 • (의무) 비어업인은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됨. • (벌칙) 80만원의 과태료 부과 	수산자원관리법 ('20.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20.5.15)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경우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자원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총허용어획량 설정 가능 • (원칙)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예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20.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20.5.15)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선수협 상호금융 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협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 납부가 일선수협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감면을 위한 목표기금제 도입 	수협구조개편법 ('20.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 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여객의 금지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선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 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의 금지행위 중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 강화 	해운법 ('20.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하도록 함 • 해기사 실습자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 실습을 하도록 함 • 해기사 실습자 거부 시 또는 운영지침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직원법 ('20.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1)
선박소유자에게 표준협약서를 통한 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계약사항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소유자에게 표준협약서를 통한 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부과 • 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계약사항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1)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철새보호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로 보상하는 행위유형 및 대상지역 한정적 - (대상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 위해 필요한 지역 - (대상활동)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지급 - (대상지역)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역 포함,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등 - (대상활동)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활동유형 포함, 야생생물 서식지 및 식생군락, 저류지 조성·관리,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자연자산 유지·관리, 하천 정화 등 	<p>생물다양성법 (‘20.6.11.)</p> <hr/> <p>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34개 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24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15개 시·군),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김해시(일부 제외), 광양시(일부 제외), 순천시 (일부 제외), 여주시(일부 제외)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화성시 * 김해시는 일부지역에서 전체시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77개 지역) • 대기관리권역(77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28개 시·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5개 시·군), 충청남도(14개 시·군), 전라북도(3개 시·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6개 시·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6개 시·군), 경상남도(6개 시·군)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포함 	<p>대기환경보전법 (‘20.4.3.)</p>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4.3.)</p> <hr/> <p>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p>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5.4') 	<p>환경영향평가법 (‘20.5.27.)</p> <hr/> <p>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외 과징금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의 금액과 원상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 ■ 불법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조항 신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p>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20.10.1.)</p> <hr/> <p>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p>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의무 고용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p>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7.17.)</p> <hr/> <p>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p>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0.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3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신고 제도 운영 도급신고 후 일부내용(도급기간, 취급물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도급신고서 재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변경신고 신설 도급 변경신고 규정 신설, 변경되는 사항만 작성·신고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20.10.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반수도 사업자(지사체 등)는 수질기준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신설 수도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 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파견하는 제도 신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6607호)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1.27.)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15-7114)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물환경보전법 ('20.11.27.)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시 사전에 반영여부 확인하여야 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TMS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폐수처리업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5% 이내 부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성능검사 의무 성능검사 판정 후 5년마다 갱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 제공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하게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에 벌칙부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20.10.17.)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시행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보도자료) 혁신형물기업 100개육성, 물산업선진국으로 우뚝선다.</p>	물산업진흥법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2)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홍수특보 발령지점 60개, 홍수정보 제공지점 319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 홍수특보(60 → 65개 지점) • 홍수정보(319 → 409개 지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특보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단기예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예보) 6시간까지 1시간 단위 예보 • (단기예보) 46-67시간까지 3시간 단위 예보 ■ 폭염특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최고기온이 각각 33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 특보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한 구역으로 특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단기예보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예보) 6시간까지 10분 단위 예보 • (단기예보) 58-67시간까지 1시간 단위 예보 ■ 폭염특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최고체감온도가 각각 33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 특보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4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각 권역별 특보 발령 <p>☞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여름철 달라지는 기상서비스</p>	(20.5.15.)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2)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알리미) 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모바일웹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정보 및 지진·지진해일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모바일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앱(날씨알리미)을 통해 사용자 위치의 상세 날씨정보와 지진·지진해일정보 제공 		(20.1.30.)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파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파특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파로 인한 분야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 취약성·노출을 고려한 분야별 한파 영향정보 제공 <p>☞ (참고) 접속 경로: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육상날씨)위험기상) 영향예보</p>		(20.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의 장이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 ■ SW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 및 제안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 (개정) 국가기관등의 장은 SW발주시 SW사업자가 과업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개정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SW사업 체결토록 의무화 ■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 가능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2)</p>
사업수행 장소 제한 근거 규정 (원격지 개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유지관리를 제외한 SW개발사업 발주시 SW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한 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요건 제시 가능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2)</p>
과업심의회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변경심의회 임의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의 장의 과업심의회 (과업변경심의회)에서 명칭 변경 설치 의무화 변경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계약 반영 의무 명시 • 과업내용 및 내용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기간의 조정에 관한 포괄적 심의 가능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1)</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정계약의 원칙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계약 당사자의 공정 계약 및 신의성실 원칙 도입 ■ 계약서 작성 의무사항 및 불공정 계약기준 명시 •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무효화 ■ 계약서 작성 의무사항 및 불공정 계약기준 명시 ■ 과기정통부장관의 표준 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 근거 마련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지재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 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승인 의무 부담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1)</p>
SW지재권 보호 강화 (산출물 활용 보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가능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3)</p>
민간투자형 SW사업 근거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가능 	<p>소프트웨어 진흥법 ('20.12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3)</p>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前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 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투자금액 1억원이상+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後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 ※ 종전의 범위(①,②) 이외에 ③을 추가 •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산·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외국인투자촉진법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2,990개)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0년 외국인투자촉진 법개정안 보도자료</p>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소재부품업종과 신성 장기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2,990개)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0년 외국인투자촉진 법개정안 보도자료</p>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3)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소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재원확보) 추진계획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재원을 확보 • (사업시행)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축법」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 가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8.)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044-203-4632)
자가판정시 사전 교육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판정 제도 도입 •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p>	대외무역법 ('20.6.1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3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략물자 판정기관 위탁 및 자가판정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판정관련 전문기관 • 제2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p>	대외무역법시행령 ('20.6.1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32)
국·공유지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공유재산의 임대 갱신 기간이 서로 상이(최초는 10년 이내로 동일) • (공유재산)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 (국유재산)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 ■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감감가능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처분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만 받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토록 함 ■ 국·공유재산 동일하게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 ■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도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감감 가능하도록 개선 ■ 임대 등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종물로 하고, 대상은 타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결정하여 산업부에 매년 제출토록 하고, 산업부는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신재생 에너지법 및 시행규칙 ('20.10.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044-203-536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급사업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법령으로 관련 규정 신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점검사항·방법 등을 매년 지침으로 시행기관에 제공 설치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 시공사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 부여 점검결과 보고 체계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small>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규칙도 해당)</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p>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금융지원을 시행중이나, 재생에너지 전용 보증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근거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6)</p>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22년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각각 8.0%, 9.0%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공급량 비율의 법적인도인 10%내에서 '21~'22년 비율을 각각 9%, 10%로 상향 조정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2)</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급인증서 발급미신청에 따른 공급인증서 소멸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 발급 신청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인증서를 발급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발전량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선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2)</p>
집적화 단지 조성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법상 보급사업으로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기관 선정,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실시절차 및 지정 요건을 규정 (절차) 지자체가 개발계획 작성 → 산업부에 제출 → 심의회 심의 → 사업지 지정 (요건) 적합한 자원, 전원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수용성·환경성, 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1)</p>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공공기관의 설비 설치 이용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의무 비율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곤란 '11~'20년 공급의무 비율은 매년 상승(1~3%p)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20년 이후는 30%로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설비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22년부터 2년 단위로 공급의무 비율을 2%p씩 상향하여 '30년에 40%로 조정 	<p>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1.)</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p>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단계에서의의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함께 의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p>전기사업법 (*20.10.1.)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 '21.1.1. 시행)</p>
		<p><smal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small>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p>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기준이 미비하여 민원 등 행정력 낭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발전사업 • (절차) 발전사업허가 신청 7일(소규모) 또는 14일(환경) 전에 발전소 입지지역의 일간신문 등에 사업내용 등을 고지하고 결과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시도지사 등은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전기사업법, 시행령 ('20.10.1.)</p>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p>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양도·양수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발전사업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사망, 파산 신청, 재해 등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전기사업법, 시행령 ('20.10.1.)</p>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지 중간복구 명령 이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 중간복구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 태양광 및 풍력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간 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의무화 • 명령 불이행 시 발전사업 허가권자가 사업 정지 명령 가능 • 다만, 계절적 요인, 부분 복구공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행규칙 포함)</p>	<p>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0.1.)</p>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행규칙 포함)</p>	<p>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p>
과금형 콘센트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시설 요건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표시 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기 외에도 과금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요건에 포함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전기사업법, 시행령 ('21.1.1.)</p>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3)</p>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에 관한 내용 신설 •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 발전기가 육자·섬에서 멀어짐에 따라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 거리에 따라 전체 지원금 축소 • 전체를 7개의 구간으로 구분, 16km까지는 100% 지원하고, 16km 초과시 1km 당 4%씩 축소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2곳 이상인 경우 지원금 배분방법에 관한 내용 신설 •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에 해상풍력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를 추가 • 면적 및 인구 기준의 비중을 축소(現 40%, 30% → 각 15%)하고, 거리 가중치 고려 하도록 기준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시설(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추가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20.8.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2-3)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집단에너지사업법 ('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및 설치기준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 가스보일러 제조자 및 수입자(외국가스 용품 제조자 포함) :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여 판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대상 :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스 사용 시설 * 기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 시설은 '21.8.5.까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사업법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①~③(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사업법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①~③(생략) • (신설) ④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5.)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8)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법불량 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리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리콜 명령/권고 등의 처분 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서면 결과보고서를 접수받아 이행현황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리콜 조치를 하거나 결과를 보고한 경우, 실제 이행되었는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보완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완명령 처분 미이행 시 처벌 할 수 있음 	<p>「제품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6.11.)</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p>
		<p>☞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제품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p>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새로운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투자방식 : ①주식, ②무담보전환사채, ③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④무담보교환사채, ⑤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방식에 추가 	<p>벤처투자법 ('20.8.12.)</p> <p>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p>
		<p>☞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벤처투자법</p>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은 피투자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가 불가하여 후속투자에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p>벤처투자법 ('20.8.12.)</p> <p>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p>
		<p>☞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벤처투자법</p>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모집에 제한적인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허용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경우, 법인출자자의 참여 비중이 조합결성액의 49%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출자자 참여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 	<p>벤처투자법 ('20.8.12.)</p> <p>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p>
		<p>☞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벤처투자법</p>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 및 생산실적이 미흡한 산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 • (지정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산업단지 • (지정요건)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도의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명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바꾸고,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등 확대 개편 • (지정대상)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이 낙후·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지역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 (지원내용)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 고용안정 등 지원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6.25.)</p> <p>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p>
		<p>☞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p>	

특허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손해배상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특허발명에 대한 로열티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이 되도록 함 	<p>특허법 ('20.12.10.)</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p>
		<p>☞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손해배상액 현실화 보도자료</p>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 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담보 제공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제공 • (예외) 일괄납부업체 중 신용담보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는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 직불 합의가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8.)</p>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p>
		<p>☞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는 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만 이동지원 서비스 해당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유지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예외지원 대상은 120%이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지급자는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예외지원 대상은 140%이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모자보건법 ('20.7.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질병관리본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E형간염 제2급 법정감염병 지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043-719-7107)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보도자료 발표 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1.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1)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명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를 실시해야 함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집단결핵시설 결핵관리 더 강화한다! 보도자료(20년 5월 19 배포)	결핵예방법 ('20.6.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043-719-7287)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 학교 유치원 :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군부대 :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사업장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집단결핵시설 결핵관리 더 강화한다! 보도자료(20년 5월 19 배포)	결핵예방법 시행령 ('20.6.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043-719-728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5개 직종 추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직종별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레미콘차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의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추가 ① 방문판매원: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② 방문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⑤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주(안전운임 적용대상), 철강재 운송차주(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위험물질 운송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771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5.2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16.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이후발생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 (원칙)'18.1.1.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 산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9.29.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 (원칙) '16.9.29.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7717)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54조~제56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제175조) • 그 외 필요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0.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 ① 의료비: 1,000만원 ② 장례비: 1,000만원 ③ 부모요양비: 1,000만원 ④ 자녀학자금: 1,000만원 ⑤ 혼례비: 1,250만원 ⑥ 소액생계비: 200만원 (*20.5.1~12.31. 500만원) ⑦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액 (*20.5.1~12.31. 2,000만원) ⑧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 (고용위기지역 등 2천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용자 대상 •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 9개 직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 ① 의료비: 1,000만원 ② 장례비: 1,000만원 ③ 부모요양비: 1,000만원 ④ 자녀학자금: 1,000만원 ⑤ 혼례비: 1,250만원 ⑥ 소액생계비: 200만원 (*20.5.1~12.31. 500만원) ⑦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액 (*20.5.1~12.31. 2,000만원) ⑧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 (고용위기지역 등 2천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3,000만원 한도(*12.31) ■ 용자 대상 확대 •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 14개 직종 등 -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운송 차주 일부) ☞ (참고) 근로복지넷) 공지사항 	<p>근로자 신용 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20.7.1. 개정)</p> <p>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중복지급 불가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 복지급 허용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허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20.6.2.)</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허가, 사후관리 : 약사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첨단재생바이오 법에 따라 허가 및 안전관리 실시 • (허가) 암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제의 경우 신속 처리제도 신설 - 품목분류 및 맞춤형심사,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를 통해 제품화 지원 - 첨단바이오기술을 적용한 유전물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품목분류 절차 신설 • (안전관리) 세포채취단계의 안전기준 신설, 제조·품질관리 및 장기추적조사 실시 - 세포 취급 전문업종인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 줄기세포치료제, 동물조직·세포를 사용한 제품은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시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추적조사 실시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p>첨단재생바이오법 (*20.8.28.)</p> <p>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224개소 ■ 급식시설이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 절차 - 모바일을 통한 회원가입 불가 ■ 지원율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개소 추가 (전국 228개소) - 서울 3개소, 전남 1개소 ■ 급식시설이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 절차 간소화 - 모바일을 통한 회원가입 가능 ■ 지원율 90%로 확대 	<p>(*20.9월)</p> <p>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p>
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사용자 중독재활센터이용은 수도권 거주자만 제한적 이용 *기준: 서울(당산)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재활센터 영남권에 추가 설치되어 서비스 이용 확대(*20.7) *변경: 서울 1개소, 부산 1개소 	<p>(*20.7월)</p> <p>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 2804)</p>

국토교통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 서비스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운용자가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 드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허가 민원은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드론 장치신고 민원은 민원24을 통해 신청 • 특별비행승인은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등 민원 창구가 다양하여 민원인의 혼란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오픈으로 드론 이용자 편의 제공 • PC·모바일을 통한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하나의 창구를 통해 민원 신청가능 • 신청한 민원의 진행 사항 및 처리결과를 SMS 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 • 드론의 등록(장치신고·사업등록)부터 운영(비행승인·항공사진촬영허가), 말소까지 드론 정보 수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현 <p>☞ (참고)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 시범운영('20.4.-)</p>	<p>제도개선 ('20.8월)</p> <hr/> <p>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90)</p> <p>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032-740-2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기등기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 (내용)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자체없이 -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재) 과태료 500만원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추후 배포 예정</p>

